

20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2006. 5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 립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여 성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농촌진흥청, 산 립 청, 소방방재청

목 차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2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4
1-1-3-0. 농작업 재해보상지원	6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8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10
1-2-1-2.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12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14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17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19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지원	21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23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확대	25
1-3-5-2.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27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29
1-4-1-2.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설치·운영	31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33
1-4-3-0.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35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38
2-1-1-2.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특별전형 확대	40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41
2-1-1-4. 한국 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43
2-1-2-6.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46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48
2-1-3-5. 방학캠프 운영 지원	50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53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56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58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60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62
2-2-3-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64
2-2-3-2.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66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68
2-3-1-2. 교원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70
2-3-4-0.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72
2-3-5-0.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설치	74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3-1-1-0. 농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77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79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82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84
3-2-2-1. 소도읍 육성사업	86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89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	92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94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96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	98
3-3-2-4. 소하천 정비사업	100
3-3-2-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03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105
3-3-3-2. 교통서비스 강화	108
3-3-3-3. 국고여객선 건조	110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12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114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116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18
3-3-5-2.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120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122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123
3-3-5-5.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128
3-3-5-7. 산림박물관 건립	131
3-3-6-1. 정보화마을 조성	132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34
3-3-6-3. 정보화인프라 구축	136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138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140
3-3-7-2.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142
3-3-7-3. 농어업 관련정보 제공 확대	144
3-3-7-5. 어업인 정보화 교육	146

제4절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4-1-1-2.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149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151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	153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55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157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160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163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165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168
4-2-1-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171
4-2-1-9. 저수지 수변개발	173
4-2-2-1.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176
4-2-2-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178
4-2-3-0.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구축	180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182
4-3-1-0. 경관보전 직불제	184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187
4-3-5-0.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기반 구축	189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192
4-4-1-0. 1사1촌운동	194
4-4-2-0.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갓기 활성화	198
4-4-3-1.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확대	200
4-4-3-2. 도농교류센터 운영	202
4-4-4-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205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	------------------

(농림부 / 농촌사회과)

1. 사업목표

-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 지역 거주 농어업인에 대해 국민건강 보험료를 경감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비 : 6,594억원('05~'09 1차 계획기간 중)
- 사업규모 : 603천명 지원('05년)
- 시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업추진
- 추진내용
 - 농산어촌 거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8%의 보험료를 경감지원
 - 보건복지부의 22% 경감과 합쳐 총 40%를 경감 지원
 - 세부목표
 - 경감율 : ('04) 8% → ('05) 18% → ('06) 28% (총 50%)
 - 지원조건 : 국고 100%

3. 연차별 추진계획

- 향후 5개년 계획

(단위 : 천명, 억원, %)

연 도		'05	'06	'07	'08	'09	합계 ('05~'09)	비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지원 대상	603	599	584	571	557	-	
	사업비 (국비)	666	1,359	1,433	1,512	1,594	6,564	
경감율 (%, 농림부 소관)		18	28	28	28	28	-	

□ 산출근거

연 도	산출근거
2005년	602,583세대×10,999원×12월(18% 추가지원)
2006년	599,415세대×18,889원×12월(28% 추가지원)
2007년	585,329세대×20,400원×12월(28% 추가지원)
2008년	571,754세대×22,032원×12월(28% 추가지원)
2009년	558,318세대×23,795원×12월(28% 추가지원)

* 2005년은 실적치, 2006년 이후는 '06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계획치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05년 경감율 목표달성도 :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666	666	100%
	지원 농어업인 수	총 지원농어민수	천명	609	603	99%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 연금정책팀)

1. 사업목표

목 적

- 농어가 소득의 감소 및 농어촌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른 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한 고령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하기 위함

사업추진방향

-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계속 지원
-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95~2014년

사 업 비(국비 100%) : 60,540백만원('05년)

사업규모 : 농어민가입자 275천명('05년)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역 (당연적용·임의계속·특례)가입자

시행방법 : 국고보조금 대상자 선정(지원대상농어민 본인보험료 납부시 1/2지원) → 공단의 국고보조금 배정 요청 → 공단 배정(복지부)

추진내용

- 표준소득월액 12등급을 기준으로 동 등급 이하인 농어민에게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률지원하며, 12등급을 초과한 농어민에 대해서는 12등급 연금보험료의 50%를 정액(19,800원)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농어민연금가입자 지원기준 변경

- '09년 까지 :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원액을 농어민가입자 중위수 소득의 1/2까지 점진적으로 향상
- '09년 이후 : 지원 기준액은 '09년도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향후 5개년 지원(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이후
예 산 액	60,540	67,300	69,300	76,800	81,900	
기준 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6등급	18등급	18등급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지표의 목표치

- '05년도 : “표준소득월액의 12등급”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100% 달성) → “정상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연차별 확대지원 방침에 의거 '05년도 지원기준인 “표준소득월액 12등급” 적용은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적용되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표준소득월액등급	지원된 표준소득월액등급기준	등급	12	12	100%

1-1-3-0	농작업 재해보상지원
----------------	-------------------

(농림부/농촌사회과)

1. 사업목표

- 농업인이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여건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6년 ~ 계속
- 사업비 : 1,379억원('05~'09 1차 계획기간중)
- 사업규모 : 77만명 지원('06년)
- 시행방법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사업추진
- 추진내용 : 농업인안전공제와 농기계공제로 구분(보장수준 동일)
 - 농업인안전공제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15세~84세)의 농업 관련활동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등 손해를 보상
 - 농기계종합공제 : 농기계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 세부목표(안전공제의 경우)
 - * 사망보장(공통) : ('05) 15 → ('06) 25 → ('09) 60백만원
 - * 가 입 율 : ('05) 43 → ('06) 46 → ('09) 66%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3. 연차별 추진계획

- 향후 5개년 계획

(단위 : 천명, 억원)

연 도		'05	'06	'07	'08	'09	('05~'09)	비고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대상	768	768	768	835	886	-	
	사업비 (국비)	108	177	238	313	381	1,217	
농기계 공 제	지원대상	12.5	15.2	16.7	18.4	20.2	-	
	사업비 (국비)	6	6	8	9	9	38	
보장수준 (사망시 보장,백만원)		15	25	35~40	50	60	-	
사업비 총계		114	183	246	322	390	1,255	

□ 산출근거

연 도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공제
2005년	712천건×28,100원×1/2	12.5천건×92,400원×1/2
2006년	768천건×46,140원×1/2	12.5천건×92,400원×1/2
2007년	768천건×62,000원×1/2	16.7천건×92,400원×1/2
2008년	835천건×75,000원×1/2	18.4천건×92,400원×1/2
2009년	886천건×86,000원×1/2	20.2천건×92,400원×1/2

* 2005년은 실적치, 2006년 이후는 '06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계획치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사망보장(공통) 등 보장수준 : 100% 달성 (15백만원)
- 가입율 : 100% 달성 (43%)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작업 재해보상지원	보상수준 재해공제가입률	(사망시)보상금액 (재해공제가입인원수가입대상수)×100	만원 %	1,500 44	1,500 43	99%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

(해양수산부 / 수산경영과)

1. 사업목표

목표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제고로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

사업추진 근거

- 근거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04.1.1 시행)
 - 제4조(국고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제9조(업무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수협중앙회에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함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연근해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139천명)중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어선규모에 따라 국고에서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순보험료 : 30톤미만 50, 50톤미만 20, 100톤미만 10% 보조
- 운영사업비(부가보험료) : 예정사업비의 60% 보조

시행방법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회원조합이 업무를 대행

□ 추진내용

-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입율 제고 추진
 - ※ 어선원보험 가입율 : ('04) 60% → ('05목표) 70%
- 어업인의 자발적인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국고 지원율 : ('05) 50%→('06) 60%
- 시행초기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
 - ※ 현지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방안 수립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	'08예산	'09예산
어선원가입율(%)	70	74	78	82	85
사업비(억원)	150	180	262	302	336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홍보강화, 신속·공정한 보험금 지급체제 구축, 현지실태조사 결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05년 목표치인 70%의 보험가입율을 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보험가입률	(당해연도말 보험가입 신고척수 / 전년도말 보험가입 대상척수)×100	%	70	70	100%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팀)

1. 사업목표

-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등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운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1~12
- 사업비 : 별도 예산 없음(기초생활급여 예산으로 운영)
- 사업규모 : 전체수급자 중 농어민가구 특례수급자
- 시행방법 : 해당가구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실시
- 추진내용
 -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05.7월)
 -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기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완화
 -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인정('04.6월)
 -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ha미만 소유자(임차한자 포함)가 지급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논농업소득 보조금
 -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이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중 직접 생산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

3. 연차별 추진계획

2005년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05.7월)
- 수급자 선정특례 적용('05.1~12월)
- 수급자 선정기준특례 확대여부 검토('05년 하반기~'06년 상반기)

2006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 완화('06.7월)
- 2005년도 선정특례 기준 적용현황 파악
-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확대 적용 여부 검토

2007~2010년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07.1월)
- 선정기준 특례 확대여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추진

※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포함하여 요구 및 집행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농어촌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며, 수급자 선정당시 특례 기준을 적용하여 책정하므로 특례를 적용할 경우 결과에 대해서 파악이 어려움

4.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제도개선사항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준 특례운영 등		-	-	계량 불가

1-2-1-2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

(보건복지부/보건정책팀)

1. 사업목표

- 목표 : 공공보건기관 기반확충으로 농어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기본방향
 - 농어촌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 확충으로 농어촌 주민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 향상
 -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 및 지역보건법 제19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 - 2014년
- 사업비 : 569억원(국고 2/3, 지방비 1/3)
- 사업내용 : 농어촌 지역의 지역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건물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도모

※ 전체 대상기관별 지원현황('94-2005)

(단위 : 개소)

기관유형	대상기관수	시설개선	의료장비	방문보건 세트	전산장비	방문보건차량	진료소 PC
보건소	144	137	133	93	144	144	-
보건지소	1,258	491	304	246	-	24	-
보건진료소	1,866	277	-	395	-	-	1,103
기타(시도)	9	1	3	-	9	-	-

- 추진절차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 수립 →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시군구) → 사업대상기관 선정(중앙평가위원회) → 사업수행(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농특)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57,292	64,500	69,500	69,500	71,000

(단위 : 개소)

기관 유형	'06	'07	'08	'09	'10
보건소	14	10	10	10	10
보건지소	120	140	145	145	150
보건진료소	171	120	100	100	100
* 의료장비	80	111	165	165	17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기반확충						
○ 보건기관 신증축	시설개선율	시설개선율	%	30	27.7	88%
○ 장비 개선	장비개선율	장비개선율	%	40	42.2	
○ 차량 지원	지원차량수	총 지원차량수	개수	30	20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 확충
---------	----------------------

(농촌진흥청/농촌생활자원과)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 제42조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농림어업인의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한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사업목표
 -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회복 및 건강 증진
 - 농촌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6 ~ 2008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1,425개소 688억원(국비·지방비 각 50%)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보조율 100%)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96~'05) : 992개소 472억원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96~'02	2003	2004	2005
사업량		992	604	140	140	108
사업비	계	472	278	70	70	54
	국 비	236	139	35	35	27
	지방비	236	139	35	35	27

* 개소당 사업비 : ('96~'97) 35백만원, ('98~'05) 5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 기본시설 : 건강기구실, 샤워실 또는 목욕실
 - 권장시설 : 찜질방, 게이트볼장, 조리실, 휴식실, 노인실, 심야전기, 태양열이용시설, 식품가공실, 건강정보실 등
 -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마을민의 요구와 지역 여건에 따라 권장 시설 자율 설치
-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 설치
 - 벨트맛사지, 안마의자, 찜질기, 헬스자전거, 아령, 체중계 등 마을민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 및 기구 활용
 - 마을민 자율적인 시설 및 기구 활용 : 마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 및 찜질방 가동 일수,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
- 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
 - 마을단위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마을민 대상으로 건강 및 운동 교육 추진
 - 외부 체육지도자 등을 초빙하여 요가, 단전호흡, 피로회복 마사지, 농작업체조 등 실시
 - 건강관리실 기반을 바탕으로 보건소, 한의원, 병원 등의 협력 유치 계기를 조성하여 무료 의료지원 확보
- 사업 지원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 효율적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사업 평가회 개최 : 3회 340명
 - 활용우수사례 발굴 및 건강증진과제 경진 실시 : 1회 1,000명 참석, 22명 수상(장관상 2명, 청장상 20명)
 - 지방비 운영비 확보 지원 : 304개소 평균 1,949천원('05. 9. 1. 현재)

- 농업인 건강관련 프로그램 연구 지원
 - 찹질방의 노출훈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05, 농촌자원개발 연구소·서울대)
 - 취약계층 농업인의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개발 ('05~'0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협력 유치
 - 보건소, 한의원, 병원 등 건강검진, 진찰, 투약 등 유치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8년까지 1,425개소(읍면당 1개소 시범 설치 기준) 설치

○ 2005년 현재 992개소 완료, 2006~2008 433개소 설치 계획

* '06 지원 : 158개소, 79억원(개소당 50백만원)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2005까지	2006 예산	2007	2008
사업량		1,425	992	158	140	135
사업비	계	688	472	79	70	68
	국 비	345	236	40*	35	34
	지방비	343	236	39*	35	34

* 신활력사업지역 7개소 국비 보조율 10% 상향 반영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건강관리실 연간활용일수는 평균 209일로 성과목표치 160일을 31% 초과하여 달성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연평균 활용일수	총 활용일수/시설수	일	160	209	131%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여성가족부/보육지원팀)

1. 사업목표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농림어업인에 대해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 ~ '09년 (총5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05년 국고 40%('06년부터 50%로 상향조정)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내용
 - 농산어촌 지역에 보육시설 확충(100개소)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06년 ~ '10년 (총5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국공립 시설 확충	27	37	37	50	50

※ 예산처에 요구한 중장기 투자계획중 보육시설 신축물량의 25% 반영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달성도

- 농산어촌지역 보육시설 신축시설 수 목표 : 100개소
- '05년도 보육시설 신축시설 수 : 71개소 (달성율 : 71%)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신축시설수	총 신축시설수	개소	100	71	71%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	-------------------

(여성가족부/보육재정팀)

1. 사업목표

- 영유아보육법 제35조 규정의 의거 취학전 만5세아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업준비를 돕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계속)
- 사업내용 :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동에게 1년간 무상보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무상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자(4인가구 기준 272만원 이하)
- 지원단가 : 153천원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5조
- 추진형태 : 지자체 보조
- 사업추진절차 :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보육시설(아동)
- 보조율 : 50%
- 사업비 : 262억원
- 지원인원 : 28,500명

3. 연차별 추진계획

- '06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소득 인정액 318만원)까지 지원확대
 - 농어촌 지역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 353만원)까지 우선 확대
- '07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까지 확대

4. 성과목표 달성도

- '05년도말 집행실적 추정은 29,085명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치 10,242명보다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지원 이동수	총 지원이동수	명	10,242	29,085	284%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 지원
---------	-----------------

(농림부/여성정책과)

1. 사업목표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목표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 사회 활력유지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04 - 계속

사업비('05) : 448억원(국비 224, 지방비 224)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2.0ha미만 농어가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 타부처(여성부, 교육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중복지원 금지)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자녀 31천명/월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금액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지급액 : 0-1세 149.5천원, 2세 123.5, 3~4세 76.5, 5세 153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5세아는 100%)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취원아
 - 월지급액 : (국공립) 3-4세 26.5천원, 5세 53 (사립) 3-4세 76.5, 5세 153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원대상 확대 : ('06) 5ha 미만 → ('07이후) 전농가
- 지원단가 인상 : ('06)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 ('07이후) 70%이상 단계적 확대 추진

□ 사업비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사업규모	27	28	26	24	23	128
사업비	314	414	400	388	374	1,890
- 국비	157	207	200	194	187	945
- 지방비	157	207	200	194	187	945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목표 : 농어가 총영유아수 대비 지원비율 28%
- 달성정도 : 농어가 총영유아수 대비 지원비율 29%
- 산출근거 : 월평균 지원인원 30천명/농어가 총영유아수 103천명×100
 - 농어가 총영유아수 : 2000년 농업총조사 자료에서 연도별 감소율(6.1%)적용
 - 월평균 지원인원 : 자치단체별 실제 지원인원을 취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양육비 지원을	(양육비지원 아동수/ 농어가 총영유아수)×100	%	28	29	105%

1-3-2-0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	---------------------

(농림부/여성정책과)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비('05) : 37억원(지방비 32, 자부담 5)
- 지원대상 : 각 도별로 지원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규모 : 전국 34개소
-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85%, 자부담 15%
- 지원내용 : 센터 운영자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일부 지원
- 센터의 주요사업 내용
 - 필수사업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 임의사업 :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
-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

사업비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비 고
사업량(개소)	73	99	163	163	163	사업량은 연도별 누계 기준
사업비	84	114	187	181	181	
· 지방비	71	97	159	154	154	분권교부세 포함
· 자부담	13	17	28	27	27	

※ 지방이양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상의 연차별 계획으로 자치단체별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정도에 따라 사업목표 수정 불가피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목표 : 전국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개소수 34개소
- 달성정도 : 전국 34개소 운영으로 목표대비 100% 성과 달성
- 달성을 산출근거 : 각 도별 센터 운영개소수를 합산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운영개소수	총 운영개소수	개소	34	34	100%

1-3-3-1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농림부/여성정책과)

1. 사업목표 및 추진배경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질향상에 기여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질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99년부터 지원,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실시됨.
 - 지원액 : 24,000원/1일(30,000원의 80%)
 - 지원일수 : 30일 범위 내에서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업인의 삶의질 향상)
- 추진경과
 - 1999년 : 농가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0년 : 농가도우미지원 시범사업 실시(68개 시·군, 599백만원)
 - 2001년 : 87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 2002년 : 전국으로 확대 실시(1,037백만원)
 - 2005년 :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계속
 - 사업비 : 3,215백만원(지방비 80%, 자부담20%)
 - 사업규모 : 3,509명
 - 시행방법 : 매년 지자체 계획에 의거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20%는 자부담
- ※ 이양 전 국고에서 지원하던 40% 예산은 행자부의 분권교부세에서 시·군별로 지원실적에 따라 배분

3.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5개년 계획						비고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량(백명)	170	34	34	34	34	34	
사업비(억원)	405.5	30.6	71.4	89.3	107.1	107.1	

※ 5개년 계획의 사업량과 내용은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융자 계획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지원인원은 103%로 목표대비 초과 달성
 - 인원 : 103%(계획 3,400명 대비 실적 3,509명)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농어가도우미 지원확대	도우미 지원원수	총 지원인원수	명	3,400	3,509	103%

1-3-5-2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농촌진흥청 / 농촌생활자원과)

1. 사업목표

목 표

- 생산과 판매의 일관성 있는 포장개선기술 시범지원, 브랜드화 추진으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시키고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농촌진흥법 제2조, 농촌진흥법 제13조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05~2015

사 업 비 : 13,250백만원

사업량 : 271개소

시행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상 보조사업 추진
- 기술지도 및 현장교육 병행 추진

추진내용

-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 사업장 시설 및 기구보완, 브랜드 개발, 홍보지원 등
- 상품성 유지와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포장재질개선, 포장방법개선 등 포장/디자인 개선 (소형화·고급화·다양화)

3. 연차별 추진계획

□ 5개년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총사업비	'04	'05	5개년('06~'10) 계획						'11~'13
				소계	'06	'07	'08	'09	'10년	
사업량	157	15	15	79	15	16	16	16	16	48
단 가		30	30		30	30	30	30	30	30
사업비	4,710	450	450	2,370	450	480	480	480	480	1,440
국 비	2,355	225	225	1,185	225	240	240	240	240	720
지방비	2,355	225	225	1,185	225	240	240	240	240	72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05년 목표 : 시범사업 전후 사업장별 15% 매출 증가
- 사업성과 : 사업장별 47.4% 소득증대 (목표대비 3.1배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매출 증가율	(금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	15	47.4	316%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	------------------

(보건복지부/노인요양운영팀)

1. 사업목표

- 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노인가구 문제 및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해소하고자 가정중심으로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혜택의 지역편재 해소
- 농산어촌 거주 등으로 인해 보건소,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09년
- 사 업 비 : '05년 30억(국비 12억, 지방비 18억)
- 사업내용
 - '05년 농산어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56개소 신설
 - '09년까지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주간, 단기, 가파시설이 복합된 다기능시설) 128개소 확충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시·군·구) → 사업대상 선정(복지부) → 예산신청(시·군·구) → 예산지원(복지부) → 사업시행(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억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축 개소수	56	16	21	25	10
신축 예산	30	55	80	96	47

※ 예산액 중 국고 비율은 '05년 40%, '06년 이후 5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05년도 56개소 설치 완료(목표 달성도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센터설치수	총 센터설치수	개소	56	56	100%

(보건복지부/노인지원팀)

1. 사업목표

- 노인들에게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도시 은퇴 노인의 농어촌 회귀 유인 및 소득 창출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 총사업비 : 200억원
- 사업규모 : 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 4개소
- 지원조건 : 개소당 50억원, 국고70%·지방비30%
 - ※ 복합노인복지시설설치비
- 추진 내용
 - 4개 지역에 복합노인복지단지 1개소씩 설립
 - 단지 내에는 복합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주거단지, 생산시설(실버농업, 장류산업 등),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
- 단지의 설치·운영
 - 복합노인복지시설의 건립은 국고 및 지자체 부담금으로 추진하여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
 - ※ 설치비 : 정부보조금 50억(국고 35억, 지방비 15억)
 - 주거단지는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한 후 입주희망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 생산시설의 설치는 기업체, 농업기반공사, 입주자 등이 자기 자본 또는 사업참여자 부담금으로 건립
 - 체육·문화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관련부처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 단지별 설치·운영 >

구 분	주 요 시 설	투자비 조달 방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정부보조금 (국고35억, 지방비 15억)
주거단지	유료노인복지주택, 단지운영 인력 거주 주택 등	지자체 자체 결정 (민자유치 혹은 자체부담)
생산시설	실버농장, 장류산업 등	지자체 자체 결정 (민자유치 혹은 자체부담)
문화·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등	지자체 자체 결정 (민자유치 혹은 정부 보조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 총사업비('05~'09) : 200억원
- 재 원 : 국고 70%, 지방비 30%
- 연차별 투자계획('04~'09)

(단위 : 억원)

재 원	'04	5개년('05~'09) 계획					소계
		'05	'06	'07	'08	'09	
<input type="checkbox"/> 사업량	-	-	-	-	-	-	-
<input type="checkbox"/> 단 가	-	-	-	-	-	-	-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	200	-	-	-	-	200
○ 국 비	-	140	-	-	-	-	140
- 보 조	-	-	-	-	-	-	-
- 용 자	-	-	-	-	-	-	-
○ 지방비	-	60	-	-	-	-	60
○ 자부담	-	-	-	-	-	-	-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설치·운영	시설설치수	총 시설설치수	개소	4	0	0%

1-4-2-4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진흥청/농촌생활자원과)

1. 사업목표

□ 사업 목표 : 농촌노인에게 농업·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는 일거리를 발굴하고 생활환경 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등 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새로운 노년기 생활문화 정립하고 농촌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

※ 사업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제13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4, 제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11

□ 사업비 : 총 1,202억(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50백만원)

□ 사업규모 : 전국 대상 800개 마을 육성

□ 시행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소득활동, 건강생활, 평생학습·사회활동, 생활환경 정비 등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조성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물량 (누계)	800	100 (100)	200 (300)	200 (500)	200 (600)	100 (500)	- (400)
사업비	국 비	606.3	22.3	76	127	152	127
	지방비	596.0	21	75	125	150	125
	합 계	1,202.3	43.3	151	252	302	252

※ 2011년까지 800개소(개소당 50백만원), 개소당 3년간 지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지표 39.9% 대비 55.4%로서 15.5% 향상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활력도 및 삶의질향상 증가율	연간 개인과 마을의 활력도 및 삶의 질 향상 증가 비율	%	39.9	55.4	139%

1-4-3-0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	------------

(농림부/농산경영과)

1. 사업목표

-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 및 영농규모화 촉진
 -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59.7천ha를 집중적으로 경영이양 추진

2. 사업내용

- 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쌀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사업기간 : 1997년~2010년
- 총사업비 : 3,577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1,268억원)
- 사업규모 : 93,008ha('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45,367ha)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지원조건
 - 10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63~72세의 고령농이 3년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조금 지급
 - 지원연령 및 단가
 - < 63~69세 농업인 >
 - 매도하는 경우 : 연령에 따라 최단 2년, 최장 8년간 ha당 241천원 (연 2,896천원)을 매월 분할지급
 - 임대하는 경우 :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지급
 - < 70~72세 농업인 >
 - 매도·임대하는 경우 :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지급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시행 : 한국농촌공사)

○ 추진절차

- 대상자 선정신청(농업인→농촌공사) → 현지조사(농촌공사) → 대상자 선정·심의(농촌공사) → 대상자 통보(농촌공사→신청 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농촌공사↔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촌공사→농업인) → 사후관리(농촌공사)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합 계 (A+B+C)	'04 (A)	5개년('05~'09) 계획						'10~'13 (C)
			'05	'06	'07	'08	'09	소계(B)	
사업량	59,698	4,789	7,267	4,818	8,095	9,107	10,244	39,531	15,378
사업비	3,577	141	221	175	380	445	513	1,734	1,702

* 예산반영 : 농업·농촌종합대책 ('04.12)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달성도

- '05년 목표 : 경영이양율 20%
- '05년 성과 : 고령농업인 10,351명에게 22,103백만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원하여 7,267ha의 농지를 경영이양
 - 경영이양율 21% (경영이양자 67천명/ 전체 경영이양대상자 322천호)

* 2010년 사업목표 59.7천ha 중 12.1천ha ('04년 4,789ha, '05년 7,267ha)이양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경영이양률	(경영이양자/전체경영이양대상자)×100	%	20	21	104%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 육성
---------	-----------------

(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

1. 사업목표

추진 목표

- 농어촌에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
- 농어촌 군소재지 1군 1우수고등학교 육성으로 지역실적에 맞는 다양한 발전 모델을 정립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향상

추진 근거

- 「농어촌교육 살리기 대책」 대통령 보고('04. 2. 23.)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정·시행('04.3.5 공포, '04.6.6. 시행)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중('05. 3.)
-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 시범 운영 7교 ('04. 4)
-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7교 지원('05. 3)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05. 3 ~ 2006. 2

사 업 비 : 121억원(국고 6,065백만원, 지방비 6,065백만원)

사업규모 : 농어촌 군소재지 7개 고등학교

□ 시행방법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집행절차 : 사업지원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 → 세부추진 계획수립 및 지원 대상학교 선정(시·도교육청) →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단위학교)

□ 주요내용

-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권 부여
- 기숙사, 다목적 교실 설치, 특별교실 리모델링 등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육시설 현대화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성적우수자 등을 위한 장학금 수혜 확대

3.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연차별 추진 계획						비 고	
	'05년	'06	'07	'08	'09	소계		
사업량	7	30	44	-	-	81		
사업비	국 비	60.65	240	352	-	-	652.65	'04년 7교 시범운영
	지방비	60.65	240	352	-	-	652.65	
	계	121.30	480	704	-	-	1,305.3	

※ 기초자치단체수 : 234개(시77개, 군88개, 구69개)

4. 성과목표 달성도

□ '05년도 우수교 7개를 선정 지정하여 계획대 실적 100% 성과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우수교교 집중육성	우수교교지정수	총 우수교교지정수	개교	7	7	100%

2-1-1-2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
---------	----------------------

(교육인적자원부/대학학무과)

1. 사업목표 및 내용

-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의 특별전형의 모집인원 상한을 현행의 3%에서 4%로 확대

2. 연차별 추진계획

- 없음(2005년 단년 사업)

3. 성과목표 달성도

- 목표 대비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학생 대학입학특별전형 확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비율	(농어촌특별전형 정원외 비율/대학별 입학정원) $\times 100$	%	4	4	100%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실업계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직업교육으로 실업계고 경쟁력 강화 및 농산어촌 교육복지에 기여

2. 사업내용

- 농산어촌 실업계고교를 지식·정보사회 및 평생학습 사회에 맞도록 개편
- 농산어촌지역 실업계고 학과개편, 특성화고 지정, 통합형고 운영, 산학연계교육 시범 운영
-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시범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금액단위 : 억원)

추진 과제	사업량	5개년('05.~'09.) 계획					계
		'05.	'06.	'07.	'08.	'09.	
실업계고 학과개편	물량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50개교
	금액	100	100	100	100	100	500
특성화고 지정	물량	1개교	1개교	1개교	1개교	1개교	5개교
	금액	5	5	5	5	5	25
통합형고 개편	물량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50개교
	금액	60	60	60	60	60	300
산학연계 시범운영	물량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25개교
	금액	35	35	35	35	35	175
계		200	200	200	200	200	100

4. 성과목표 달성도

- 특성화고 지정(목표 1개교/실적 5개교 500%달성)
 - 농어촌 지역의 농·수산업계고 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지원
 - 파주공고, 춘천농공고, 강릉농공고, 곡성실고, 호남원예고 등 5개교
- 통합형고 시범운영(목표 10개교/실적 10개교, 100%달성)
 - 농어촌 지역의 종합고를 통합형고로 개편 추진
 - 일동종고, 양평고, 강릉정보공고, 정읍제일고, 함안고, 강남고, 병천고, 증평정보고, 성주고, 장성실고 등 10개교 시범 운영 중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실업계고특성화·내실화	특성화·내실화지정 고교수	특성화고 지정(신설)학교수+통합형고로 개편한 학교수	개교	11	16	145%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운영

(농촌진흥청/한국농업전문학교)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한국농업전문학교 ·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17910호)
- 농업인구 노령화와 DDA/FTA 체결 등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력 양성
 - 우수 농업CEO 양성 공급으로 우리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농업소득 증대와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주도할 농촌사회 리더 육성
 - 우리나라 정예 후계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여건 변화와 농산물 자유무역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후계농업인력 육성
 - 농업인력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술농업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후계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 생명산업인 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 배출
 - 새로운 지식과 경영기술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경영인 양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주도할 농촌지역사회 리더 양성

2. 사업내용

-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 : 683억원 (2005~2009)
- 규 모 : 720명 (240명×3학년)
- 시행방법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 제정 등 관련 규정 재정비

□ 추진내용

- 학제 개편 및 교명변경 추진
- 학과 계열화 및 농산업계열학과 신설
- 현장실습교육 지원비 인상 및 성적 장학금 지원
- 우수 영농정착 졸업생 상사업비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학제 개편 및 교명변경 추진('06년~'07년) : 학제를 3(학교교육) + 3(영농) + 1년(추가교육)제로 개편하고 학교명칭을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
- 학과 계열화 및 농산업계열학과 신설('07년~'08년) : 농촌관광 및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달 등 농업·농촌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학과 개편
- 현장실습교육 지원비 인상('05년~'09년) : 영농종사 의무이행조건으로 재학기간 중 수업료, 입학금 및 숙식비 등 교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2학년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실습교육비는 숙식에 필요한 기본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인턴십제 수준으로 증액 지원
- 장기현장실습교육생 현장실습교육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지원인원(명)	240	240	240	240	240	1,200
소요예산	600	600	600	600	600	3,000

- 성적장학금('06년~'09년) : 우수학생 유치 및 면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성적 차등에 따른 장학금 지원 신설
- 졸업생 상사업비 지원('05년~'09년) : 영농종사 의무를 이행중인 졸업생의 영농 경영성과에 따른 상사업비 지원(졸업생의 상위 10%)으로 졸업생의 사기 진작

□ 연차별 투자계획('05~'09)

(단위 : 억원)

구 분	'04까지 (A)	5개년('05~'09) 계획					소계(B)
		'05	'06	'07	'08	'09	
□ 사업량	1	1	1	1	1	1	1
□ 단 가	528	62	135	192	146	148	683
□ 사업비	528	62	135	192	146	148	683
○ 국 비	528	62	135	192	146	148	683
- 보 조	528	62	135	192	146	148	683
- 용 자	-	-	-	-	-	-	-
○ 지방비	-	-	-	-	-	-	-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당초 제시한 성과목표치 95.0%를 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졸업생 영농종사율	(영농에 종사하는 졸업생수/ 전체 졸업생수)×100	%	95	95.1	100%

2-1-2-6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	--------------------

(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

1. 사업 목표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 과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농어촌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성화 유도
-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새로운 돌파구로 '군단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운영하여 그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21조

2. 사업 내용

기 간 : 2005. 5. 1. ~ 2005. 12. 31.

사업비 : 614백만원

규 모 : 곡성군 관내 1원, 14교(유 1원, 초 8교, 중 3교, 고 3교)

시행 방법

- 예산 사업 : 국고(특별교부금) 지원
- 사업 주체 : 전라남도교육청(고), 곡성교육청(유, 초, 중)

주요내용

- 초·중학교 교과 활동 프로그램 운영
 - 방학 중 심화·보충 학습 지도
 -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초·중·고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냉·난방비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3.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2005 지원액	비고
계		614	
초·중학교 교과 활동 프로 그램 운영		16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72	
고등학교 방학중 심화·보충 학습 지도		80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280	
냉·난방비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166	

※ 2005년도 지방재정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된 사업임

4. 성과 목표 달성도

□ 성과 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등

- 농어촌 지역 학생 학력 향상으로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 지역 사회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 지원
 - 곡성군,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한 자녀 교육 지원 사업'(24억원 지원)
- 농어촌 우수 고교 육성 기반 구축
 - 신입생 지원율 증가 및 타 지역 학생 전입자 급증
 -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자수 증가 및 실업계 고교 졸업생 취업자수 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만족도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설문조사	%	50	미제출	0%

(교육인적자원부/학교현장지원팀)

1. 사업목표

- 학생의 소질·적성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 기회 확대
- 학교 밖에서 충족되고 있는 보충·심화학습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
-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

2. 사업내용

-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감
 - ※ 2002. 3월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업무 위임
 - 사업절차 : 기본계획수립→예산 확보 및 지원 (시·도교육청)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505억원(2005)
 - 사업 시행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 사업 규모 : 특기·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교육소외 지역 및 계층 교육비 지원
 - 지역교육청 단위 순회강사 확보, 강사료 지원
 - 문광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국악·연극·영화 등) 강사풀제 활용 확대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 재원형태 : 지방교육재정

3. 연차별 추진계획

『방과후 학교』 기본 모델 정착('06)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참여 학생 확대
- 40%('06, 313만명) → 50%('08, 391만명)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모델 개발('06년)

- 9개군 내외, '평생학습 도시와 연계'
- 88개군 적용('07), 51개 도·농복합시까지 확대('08)

4. 성과목표 달성도

순회강사 지원 달성도 : 104%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순회강사 확보수	순회강사 확보수	명	728	760	104%

2-1-3-5

방학캠프(도시문화체험학습) 운영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초중등교육정책과)

1. 사업목표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 및 내실화로 교육복지 증진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의 도시문화체험학습으로 문화적 지체 현상 완화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대통령 공약사항

○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보고('04.2.23)

2. 사업 내용

사업기간 : 2005. 4 ~ 2006. 1

사업규모(신규사업)

○ 사업 시행대상 : 면지역이하(도서벽지) 초등학교

○ 사업 규모 : 초등학교 1,383개교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학생)의 도시체험학습 운영 및 예산 지원

○ 총사업비 : 국고 10.35억원, 지방비 10.35억원, 총 20.7억원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 2009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운영

※ 재원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사업추진실적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1,383개교 실시

○ 시·도교육청별 도시체험학습 우수 사례 조사 및 홍보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문화체험학습 실시로 교육효과를 높임

○ 도시문화체험학습 장소

- 문화유적 : 사찰, 성터, 궁궐 등 유적지 및 문화재

- 공공기관 : 시청, 소방서, 교육청 등

- 문화시설 : 각종 전시회, 영화관, 도서관

- 산업시설 : 산업체, 공장, 백화점 등

- 체육시설 : 운동장, 경기관람 등

□ 사업추진방법

○ 지원형태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
신청을 받아 추진

○ 사업수행주체 : 시·도교육감

○ 사업집행절차 :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예산지원
(교육인적자원부→시·도교육청)→세부계획수립(시·도교육청)
→도시문화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해당학교)→계획 검토 및
선정·지원(시·도교육청)→도시체험학습 운영(해당학교)

3.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기간 및 일정

- 추진기간 : 2005년 ~ 2009년
- 추진일정

주요업무	5개년('05~'09) 계획					비고
	'05	'06	'07	'08	'09	
○ 방학캠프 운영 지원						'09이후 시도 이양

연도별 사업비

(단위: 억원)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비	20.7	20.7	20.7	20.7	20.7
향후추진계획	2009년 이후는 시·도이양 사업으로 지방비로 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방학캠프 운영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설문지를 통해 분석 평가하였으며 설문지 분석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방학캠프 운영 지원	만족도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설문조사	%	70	84	120%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1. 추진배경 및 목표

- 정부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99년 2학기부터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학비 지원('99. 9)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향상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00. 2)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모든 만5세아 무상교육비의 단계적 지원으로 교육출발점 평등구현을 위한 지원규모 확대('01. 1)
 - ※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사업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확대('02. 3)
- 만 5세아의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 구현
- 저소득층 만3, 4세아에게 교육기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아교육기회의 실질적인 확대('04년 신규)
- 저소득층의 두자녀이상이 동시에 취원하고 있는 경우 둘째아 이상 교육비 일부 지원('05년 신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3. ~ 2006. 2.(1년간)
- 지원인원 : 55,633명
 - 만5세아 : 28,934명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 21,382명

○ 두자녀 이상 교육비 : 5,317명

□ 소요예산 : 32,767백만원

○ 만5세아 무상교육비 : 21,264백만원

○ 만3·4세아 차등 교육비 : 10,626백원

○ 두자녀 이상 교육비 : 877백만원

□ 시행방법

○ 매년초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수립

○ 사업비는 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지원

○ 사업시행주체는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3. 연차별 추진계획(전체포함)

□ 만5세아 무상교육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천명,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만5세아수(A)	594	512	476	475	472
지원계층	평균소득 70%이하	평균소득 100%이하	평균소득 100%이하	평균소득 130%이하	평균소득 130%이하
지원 아동수 (보육)	142 (154)	186 (172)	183 (150)	209 (171)	208 (170)
지원비율 (보육포함)	24.0% (50%)	36.4% (70%)	38.5% (70%)	44% (80%)	44% (80%)
지원단가 (사립, 천원)	158	170	175	180	185
소요액(국고50%) (보육포함)	1,168.5 (2,452)	1,640 (3,194)	1,658 (3,045)	1,937 (3,560)	1,978 (3,639)

□ 만3·4세아 무상교육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천명,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만3,4세아수	991	954	949	942	933
지원계층	평균소득 70%이하	평균소득 100%이하	평균소득 100%이하	평균소득 130%이하	평균소득 130%이하
지원아동수	155	148	147	163	163
지원비율	15.7%	15.5	15.5%	17.3%	17.5%
지원단가(3세) (사립,천원)	158	180	185	191	197
소요액 (국고50%)	775.5	703	808	872	895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수혜율(만5세아)	(지원인원/만5세아수) ×100	%	13.2	13.2	124%
	수혜율(만3,4세아)	(지원인원/만3,4세아수) ×100	%	3.1	4.6	

2-2-1-0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

(농림부/농촌사회과)

1. 사업목표

- 지리적·경제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 4. 28)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계속
-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사업규모('05) : 828억원, 98천명
- 사업비 : 교부세(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지자체에서 사업시행)
- 2005년부터 지원대상 확대 : 소유경지 면적 1.5ha → 전 농어가
 - 개발제한구역해제 등으로 학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졸업 시까지 지원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6)에 의거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 원	98	99	91	84	77
금 액	828	780	740	700	663

※ '05 : 실적, '06~'09 :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지표인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농업인 고교생자녀 전원에게 지원되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813	828	104%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91.0	98.2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농림부/농촌사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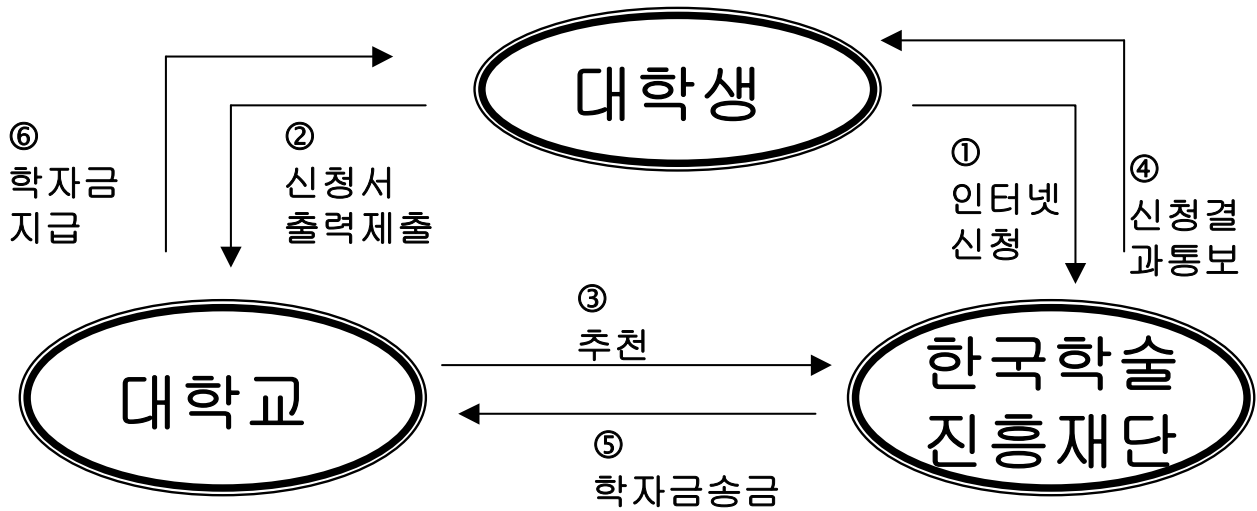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산어촌출신 학생의 대학진학기회 확대 등 교육기회 균등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 제1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총사업비 : 7,200억원 ('05년까지 기 투자액 1,779억원)
- 사업규모('05) : 638억원, 25천명
-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학술진흥재단
- 지원형태 : 정부 출연
- 지원조건 :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융자금을 1년 단위로 상환
 -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사업추진절차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융자금액(억원)	638	700	941	1,006	1,076
지원인원(천명)	25	26	32	40	4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지표인 지원금액은 출연금 및 회수금 등으로 조성되며 수혜자 전원의 매학기별 등록금등 신청금액 전액이 지원되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621	637	98%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27.0	25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	-------------------

(농림부/여성정책과)

1. 사업목표

- '04. 3월 농림부장관지시사항에 따라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후계 농업인 양성과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자금 보조
- 지원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1호 등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20조

2. 사업내용(제도개편 내용)

- 사업기간 : 2004. 8월 ~ 계속
- 사 업 비 : 연간 100억 규모
- 사업규모 : 약4,000명/학기당
- 시행방법 : 매년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지침 마련
- 지원재원 :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시행기관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 추진내용
 - 영농희망장학금 : 농과계대 2학년 이상 중 영농희망자에게 매학기마다 장학금 지원(연 240만원/1인), 영농희망장학금은 수혜기간 만큼 영농종사 의무
 - 성적우수장학금 : 전국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자녀 중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 선발 지원(연 200만원/1인)

3. 연차별 추진계획

영농희망자와 농업인의 자녀 4,000명(학기당)에게 장학금 지속 지원

사 업 명	5개년 계획					비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지원인원(명/학기당)	4,000	4,000	4,000	4,000	4,000	
- 지원금액(억원)	100	100	100	100	100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지원인원은 111%로 목표대비 초과 달성

- 인원 : 111%(계획 8,000명 대비 실적 8,919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명	8,000	8,919	111%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학교체육보건급식과)

1. 사업목표

목표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동지역 거주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며, 원활한 급식운영으로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 도모
- 나아가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1981~계속

사업비 : 626억원

사업규모 : 783천명에게 급식비 일부지원

시행방법 : 지방비 100%

추진내용

○ 학기중 연간 180일 지원

○ 지원형태

- 도서벽지 : 850~1,700원 지원

- 농촌형 : 50~770원 지원

(지원금액은 학교별 급식비 시·도교육청 재정형편 등에 따라 다름)

3.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내용

- '08년도부터 농특세 재원으로 중·고등학교 까지 점차 확대
 - ('05) 466억원 → ('06) 466억원 → ('07) 466억원 → ('08) 609억원 → ('09) 752억원

연차별 추진일정

주요업무	'04	5개년 계획				
		'05	'06	'07	'08	'09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차별 투자 사업비

(단위 : 명, 억원)

주요업무	5개년 계획				
	'05	'06	'07	'08	'09
<input type="checkbox"/> 사업량	750,537	750,537	750,537	1,015,537	1,280,537
<input type="checkbox"/> 단 가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466	466	466	609	752
<input type="checkbox"/> 국 비				143	286
<input type="checkbox"/> 지방비	466	466	466	466	466

※ '07년까지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비)에서 초등학교만 지원, 농어업 특별재원에서 '08년 중학교, '09년 고등학교 식품비 지원확대

※ 농특세 재원(국비) 미확보 시 목표 수정 불가피함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466억원 달성도 626억원 목표치 대비 134% 달성

-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농산어촌 학생의 급식비 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어 성과지표 이상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초·중·고학생 급식비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466	626	134%

2-2-3-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

(농림부/농촌사회과)

1. 사업목표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영세농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농업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여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
- 사업추진근거 : 대통령지시사항('84. 11. 3)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6 ~ 계속
- 사 업 비 : 교부세(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지자체에서 사업시행)
- 추진내용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사업규모('05) : 1,549백만원, 2,466명
- 지원대상 :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6)에 의거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억원)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 원	2,466	2,600	2,600	2,600	2,600
금 액	15	17	17	17	19

* '05 : 실적, '06~'09 :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지표인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자영농과생 전원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자영농과계고 급식비	농과계고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16	15	90%
	농과계고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2.9	2.5	

2-2-3-2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해양수산부/수산경영과)

1. 사업목표

목 표

- 자영수산과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통한 수산계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어촌후계인력 육성 및 어촌정착 유도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별표(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
- 수산계학교 육성방안('86. 교육부)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87년 ~ 계속

사업비

- 지원금액 : '05년까지 1,860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도비(분권교부세 포함) 50%, 자담(교육인적자원부 포함) 50%
- 사업규모
 -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4개 수산계고교 학생 급식비 지원
 - 충남해양과학고, 전남 완도수고·신안압해종합고, 경북 포항 해양과학고
- 지원금액
 - 기숙사 입사생 : 3090원/1일
 - 기숙사 비입사생 : 1,030원/1일
- 시행방법 :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 일부 보조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까지	'05실적	'06계획	'07	'08	'09
사업량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사업비	계	1,596	264	228	234	234
	국 비	452				
	도 비	346	132	114	117	117
	자부담	798	132	114	117	117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수산계고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명	405	386	95%

(교육인적자원부/특수교육정책과)

1. 사업목표

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대책 수립·실시
-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특수교육 내용, 방법 개선,
-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순회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목표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교과교육, 치료교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지원 확대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05. 3. ~ 2006. 2.

사업비 : 1,800백만원(국고 900백만원, 지방비 900백만원)

사업규모 : 9개 도의 농산어촌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18개소 운영 지원(센터당 1 억원 지원)

※ 산출내역 : 담당강사 인건비 2인, 특수교육용 교재·교구비, 운영비

시행방법 : 시도교육감이 지정·운영

□ 추진내용

- 농산어촌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18개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장애아 순회교육 전담 담당강사 36명(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특수교육 지원센터 배치
- 담당자의 업무 및 센터 운영 내용
 - 가정과 시설,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특수교육 순회지도
 - 장애학생 가족 및 지역 장애인 교육상담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지원
 - 일반유치원 및 일반학교 교원 특수교육 이해 및 연수지원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05	'06	'07	'08	'09
운영 지원 센터수	18	60	70	80	90
담당강사 배치수	36	120	140	160	180
예 산	900	3,000	3,500	4,000	4,5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달성도

- '05년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 100%(36명 배치)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순회강사 확보수	총 순회강사확보수	명	36	36	100%

(교육인적자원부/교원정책과)

1. 사업목표

- 유능한 교장을 농산어촌 학교에 초빙하고 희망교원에 대하여는 농산어촌 학교에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 내실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비 : 비예산사업
- 시행방법 :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시·도교육청 자체 추진
- 추진내용
 - 시·도 내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초빙교장제 실시 확대
 - 시·도교육감은 지역실정,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 실시학교를 지정
 - 시·도교육감이 농산어촌 학교를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로 지정하여 해당 학교에 유능한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초빙교장제 제도 개선 추진
 - '교원정책혁신기획팀'을 구성하여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하였고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추진
 - 우리부 시안을 교육혁신위원회에 송부하여 최종안 확정을 요청, 최종안 수립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교원 순환근무제의 확대
 - 교원 순환근무제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교원인사관리기준 개선 권장

3. 연차별 추진계획

교원승진제도개선 방안 확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06.12)

- 초빙교장 임용 비율의 점진적 확대
-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자격연수 대상자) 확대 및 지역제한 폐지
- 초빙교장 응모자에 대한 학운위 및 교육청의 심사 강화
- 초빙교장에 대한 정기적인 '학교경영실적 평가' 실시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06.9 ~)

- 농·어촌 지역 1군 1우수고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학교, 도시 내 농어촌지역 학교, 특성화중·고 등 150여개를 대상으로 단계적('06년 50개교)인 시범 운영
- 특성화중·고 약 20개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CEO) 등에게 공모기회 부여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교원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초빙교장제 실시율	(초빙교장제 실시 학교수/전체 학교수) ×100	%	5	3.96	79%

2-3-4-0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교육인적자원부/지식정보정책과)

1. 사업목표

- 교육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지속 추진
 - PC 1대당 학생 5명 수준으로 고도화
 -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 속도를 2Mbps 이상으로 증속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도 - 2010년
- 사업비(연평균) : 4,600억원
 - PC 구입비 : 3,900억원, 인터넷 통신비 : 700억원
- 사업규모 : 1만여개 학교 PC의 25%를 매년 교체
- 시행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 추진내용 : PC 보급 및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 계획

※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동일한 기준으로 보급

구 분	'05	'06	'07	'08	'09
PC1대당 학생수	5	5	5	5	5
인터넷속도 (Mbps)	2M이상 (100%)	5M이상 (100%)	10M이상 (100%)	15M이상 (100%)	20M이상 (100%)

- '05년 추진 결과(전국 평균)
 - PC 보급 : PC 1대당 학생수 6.3명 수준으로 보급됨
 - 인터넷 통신속도 : 2Mbps 이상 96.3%

4. 성과목표 달성도

□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 속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PC 1대당 학생수	PC 1대당 학생수	명	5	6.2	110%
	인터넷 통신속도	인터넷 통신속도 2Mbps이상	%	100	96.3	

2-3-5-0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설치

(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

1. 사업목표

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7조
- 각 시도교육청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규칙

목표

-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활성화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05년~

사업성격 : 비예산사업

추진내용

-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계획·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산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도 교육청협의회 설치 현황 : 12개 시·도교육청 설치

※ 서울·부산·광주·대전교육청은 도시지역으로 설치 제외

3. 연차별 추진계획

당해연도로 협의회 규칙 제정 및 구성 완료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설치를 통하여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 시책의 효율적 추진 목표를 원만히 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	지역협의회 구성수	지역협의회 구성수	개소	9	12	133%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3-1-1-0

농촌지역개발 전문인재 육성 및 저변확대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농촌지역개발리더, 참여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사업추진능력 배양 등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역량 강화
-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이후(계속)
- 사업비('05) : 257백만원(국고)
- 사업규모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시행 및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림부) → 시행계획 수립(한국농촌공사 등) 및 승인(농림부) → 세부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한국농촌공사 등) → 사업비 정산(농림부)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7조 및 제38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및 제38조
- 사업주요내용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자원 유형별 역량을 배양하도록 체계적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촌지역개발 리더쉽육성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등
 - 체계적인 교육 관리·지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 사후관리방안 마련,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 개발,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재 개발, 내 고향 잠재자원개발 컨테스트 개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추진내용	1단계(2005)	2단계(2006~2008)	3단계(2009)
○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시행	○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시범운영	○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운영	○ 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지원시스템 마련	○ 교육수료자 사후관리 방안 마련 ○ 농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DB 구축 ○ 인력육성과 지역개발 사업 연계 방안 마련 등	○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학적관리 시스템 개발·운영 ○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재 개발·보급 ○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컨테스트 개최 ○ 농촌지역개발 현장전문가(농촌마을CEO) 제도 시행 ○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등	

□ 연차별 투융자계획(국고)

(단위 : 억원)

구 분	5개년('05~'09) 계획					
	'05	'06	'07	'08	'09	소계
합 계	2.6	15	17	20	20	74.6
○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시행	2.1	4	4	5	5	20.1
○ 지원시스템 마련	0.5	11	13	15	15	54.5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인원은 '05년에 1,300명을 목표로 하여 '05.12월까지 1,707명 교육을 실시, 당초 목표의 131.3%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지역개발전문인력육성 및 저변 확대	전문교육인원수	총 수료인원수	명	1,300	1,707	131%

3-2-1-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농촌지역을 전원생활·여가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권역별로 권역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적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2017
- 총사업비 : 56,577억원(국고 45,566, 지방비 11,012)
 -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역할을 할 1,000개권역을 우선 추진
 - * 권역당 70억원(국고 80%, 지방비 20%) 범위내에서 3~5년간 지원
- 추진현황 : '05까지 36개권역 착수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서작성(주민) → 사업신청신청(주민, 시·군, 시·도) → 타당성조사(농림부) → 기본계획안 작성(시·군,농촌공사) → 기본계획수립(시·군,시·도) → 시행계획수립(시·군,시·도) → 사업시행(시·군) → 준공(시·도)
-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 지원과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지원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S/W관련사업 : 컨설팅, 마케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당초 '13년까지 1,000개 권역을 착수하고, '05~'09기간중에는 276개 권역을 착수할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주민참여형 상향식 종합개발사업이어서 현재로서는 연간 30~40개 권역이 적정 수준으로, 현재의 사업추진 속도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 중장기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확대추진할 경우, 사업자체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어 1,000개 권역 착수 목표를 '17년으로 4년 연장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조정

<당 초> : 삶의질향상 5개년('05~'09)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05	'06	'07	'08	'09
사업량(권역)	276	36	20	50	70	100
사업비	10,896	752	1,119	1,819	2,877	4,329
- 국 고	9,176	645	949	1,517	2,442	3,617
· 보조(80%)	7,416	489	755	1,283	1,892	2,997
· 용 자	1,754	156	194	234	550	620
- 지방비(20%)	1,726	107	170	302	435	712

<조 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05	'06	'07	'08	'09
사업량(권역)	160	36	20	40	40	40
사업비	7,468	752	575	1,350	2,199	2,594
- 국 고(80%)	6,074	645	466	1,091	1,771	2,101
- 지방비(20%)	1,394	107	109	259	428	493

* 농촌주택정비 용자금은 '06이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 '05년도에 착수한 36개 권역의 1단계 사업('05-'07) 완료 후 '08년도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09년까지는 신규 사업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연간 40개 권역)
- 사업성과 평가후 '10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10~'13 기간중 80개/년, '14~'16기간중 130개/년 수준 추진
- 사업량을 확대하는 '10년부터 지자체에 업무 대폭 이양
 - 지자체 : 대상지역 선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 농림부 : 예산확보, 모니터링, 성과평가, 제도개선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업착수율	$\frac{\text{누계 착수권역수}}{1,000(\text{목표권역수})} \times 100$	%	3.6	3.6	100%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	-----------------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1. 사업목표

- 낙후어촌의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년 ~ '13년
- 총사업비 : 8,795억원 ('05년까지 기 투자액 4,879억원)
- 사업규모 : 225개 권역('05년까지 135권역 완료)

[1단계('94~'07) : 160권역, 2단계('07~'13) : 65권역]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80%, 지방비15%, 자담5%
 - ※ '03년 이전사업 국고보조 50%, 지방비 50%<자담포함>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4까지	'05실적	'06계획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권역)	225	129	23(5)	(17)	12	10	51	
사업비	계	879,531	455,068	32,817	38,646	48,000	50,000	255,000
	보 조	568,254	229,511	25,426	30,917	38,400	40,000	204,000
	지방비	268,648	202,803	7,098	5,797	7,200	7,500	38,250
	자부담	42,629	22,754	293	1,932	2,400	2,500	12,750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1단계('04~06) 160개 권역중 135권역 완공(권역당 35억원 규모)
- '05년 23개 권역중 6개 권역 완료, 17개 권역 계속투자(2년 사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어촌종합개발사업(균특회계)	사업권역수	누계 사업권역수	권역	152	135	89%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경영지원과)

1. 사업목표

목표

- 전국토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의 진흥과 활성화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조성
-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사업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제29조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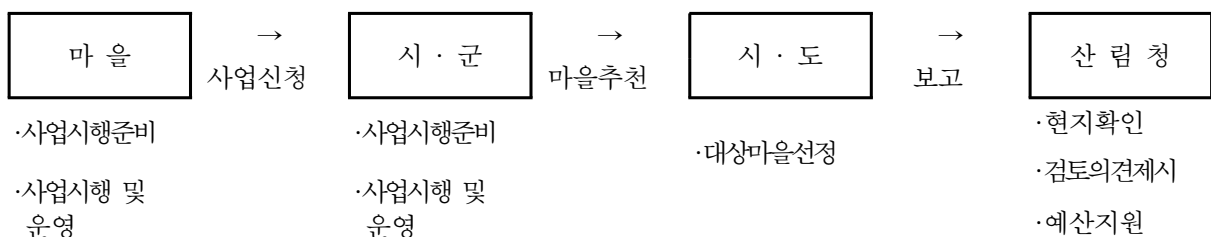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3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년, 마을조성 2년)

사업비 : 20,364백만원

사업규모 : 45개소 마을 (신규마을 15개소, 조성마을 30개소)

시행방법



□ 추진내용

- 소득기반조성(지역특산물 소득사업)
- 생활환경개선(취락구조개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 단기 임산소득원개발, 산촌휴양기반조성사업, 기타 S/W 관련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5	53	51	54	54	54
신 규	15	18	18	18	18	18
조 성	30	35	33	36	36	36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2004년도 완료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81%로 성과목표를 달성함(외부기관 용역 의뢰 결과)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산촌종합개발사업	산촌주민 만족도	{ \sum 취득점수/(100×설문대상자수)}×100	%	75	81	108%

3-2-2-1

소도읍 육성사업

(행정자치부/균형발전팀)

1. 사업목표

-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의 중추적인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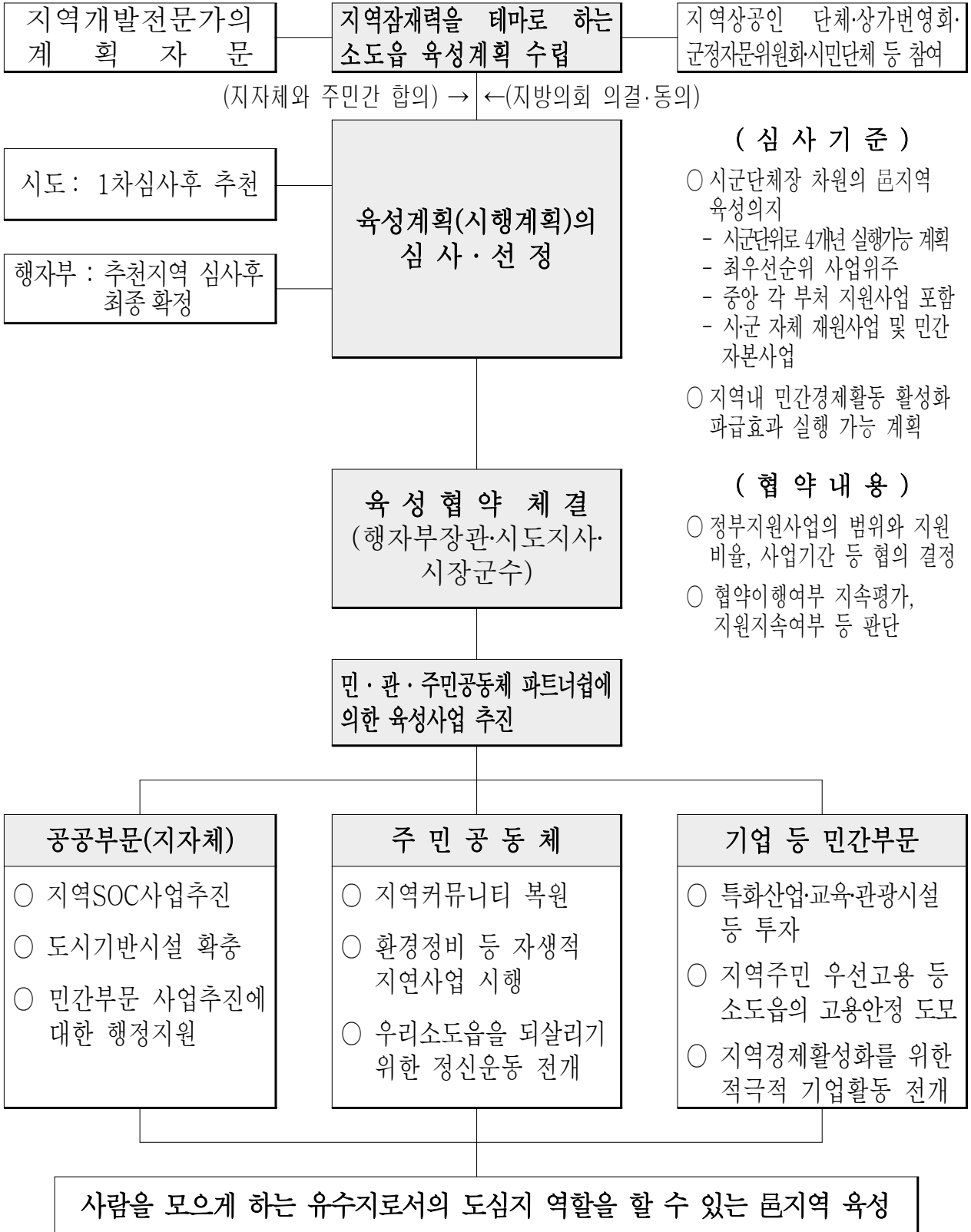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 ~ 2012
- 사업비 : 12조(국비2조, 지방비2조, 타부처국비,민자등 8조)
- 사업규모 : 194개소도읍('01.11.9 지정·고시)중 선정된 지역에 4년간에 걸쳐 100억원 지원
- 사업내용 : 지역특화산업, 도시 인프라확충, 관광활성화사업 등
- 추진내용

구분	선정 소도읍수	사업지원 소도읍수	사업비(억원)				
			계	국비	교부세	지방비	기타
계	66	159	10,965	1,504	1,504	4,579	3,378
2003년	14	14	962	150	150	453	209
2004년	22	36	2,976	300	300	1,237	1,139
2005년	7	43	3,013	437	437	1,179	961
2006년	23	66	4,013	617	617	1,710	1,069

□ 시행방법(대상지역 선정 및 추진절차)

(시·군)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5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이후
계	120,000	6,952	4,013	5,640	6,580	6,980	89,835
국 비	10,000	887	617	910	1,145	1,245	5,196
기 타	110,000	6,065	3,396	4,730	5,435	5,735	84,639
소도읍수	194	43	23	20	20	20	68

※ 기타는 지방비·민자·타부처 국비 등 합계

4. 성과목표 달성도

□ 2012년 사업의 종료후 성과목표를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중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여 연도별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소도읍육성사업	사업소도읍수	총 사업 소도읍수(누계)	개소	43	43	100%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	---------------------

(행정자치부/균형발전팀)

1. 사업목표

- 쾌적한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생동하는 농어촌마을 조성
-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1976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불량주택개량사업이 '95.12.29일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정으로 농어촌마을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기반을 조성되어 본격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6 ~ 2014 (농특세 지원기한까지)
- 사 업 비 : 14조 6,21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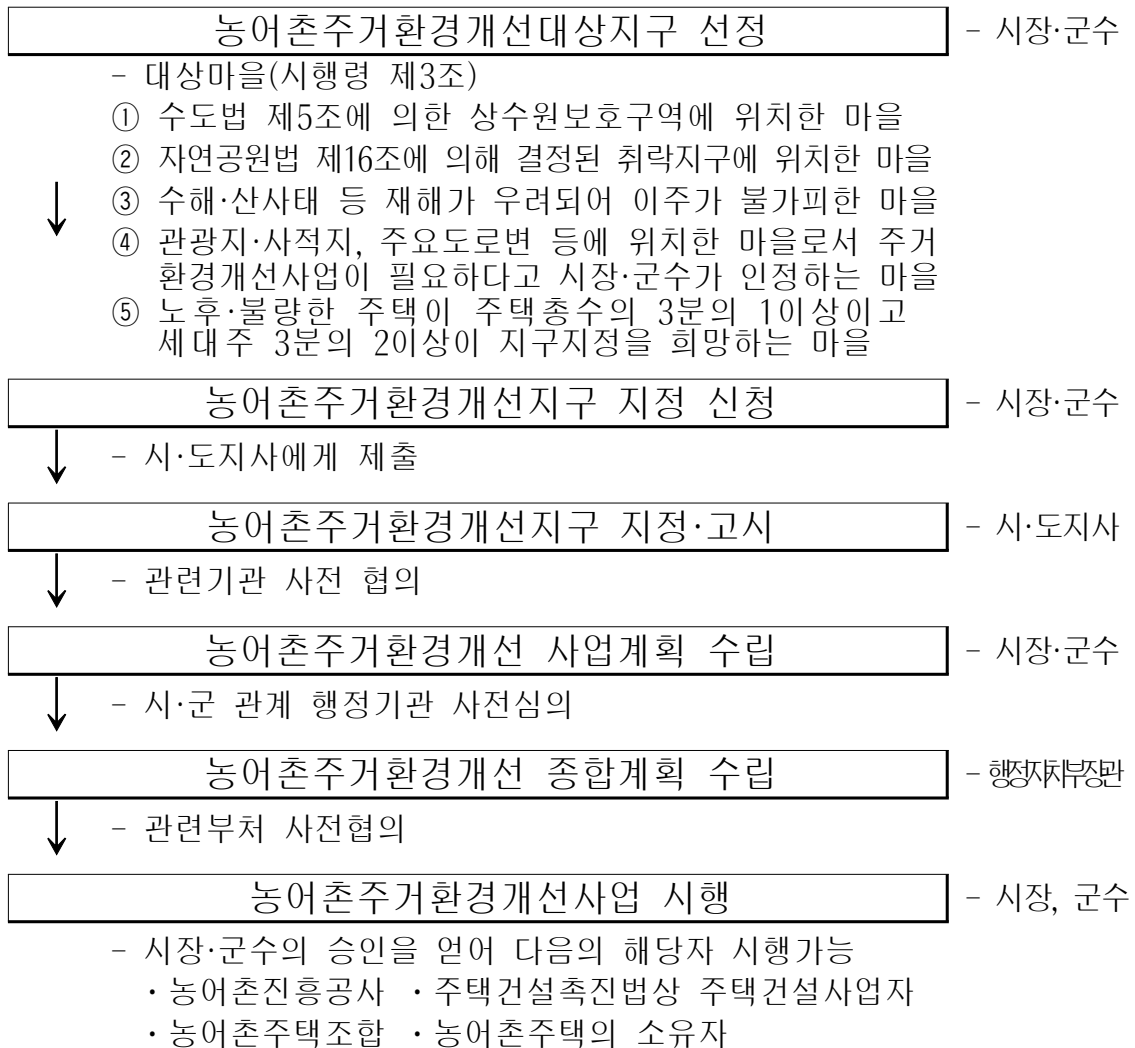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주택개량	520,393 동	9,524,869	농어촌주택 2,628,967동의 20%
마을정비	8,498 마을	3,765,436	농어촌자연마을 47,357개소의 18%
빈집경비	78,808 동	1,331,455	'00.9.8 중장기추진계획 수요조사

※ 농어촌마을일제실태조사('97.7.10~9.30), 농어촌주거환경개선중기계획('01.8) 반영

- 추진내용

사업구분	1976~2005 실적		2005 추진		비 고 (지원기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366,378		370,133	
주택개량	386,203 동	4,158,029	6,000	180,000	동당 3천만원 융자
마을정비	6,675 마을	1,187,104	216	185,962	마을당 10억원 지원
빈집정비	59,128 동	21,245	6,611	4,171	동당 50~100만원 지원

□ 시행방법(사업지구 지정 및 추진절차)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45,842		428,000		522,000		522,000		522,000
주택개량	4,519	180,000	6,000	240,000	6,000	300,000	6,000	300,000	6,000	300,000
마을정비	127	161,932	130	182,000	150	210,000	150	210,000	150	210,000
빈집정비	6,617	3,910	6,000	6,000	6,000	12,000	6,000	12,000	6,000	12,000

※ 2008년도 부터 주택개량은 세대당 4천만원 → 5천만원으로, 빈집정비는 동당 1백만원 → 2백만원으로 지원기준 조정(예정)

4. 성과목표 달성도

□ 5년 단위의 중기계획 및 2014년까지 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주거환경개선						
○ 농어촌 주택개량 (농특세 10%)	주택개량수	총 주택개량수	천동	6	6	114%
○ 농어촌 마을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정비마을수	총 정비마을수	마을	212	216	
○ 농어촌 빈집정비	빈집정비수	총 빈집정비수	천동	5	7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

(농촌진흥청/농촌생활자원과)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전통적 농촌주거문화의 유지·보전과 현대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성 확보를 통한 농촌의 주거가치 향상과 도·농교류 촉진”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촌진흥법(제2조 2항, 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제29,30조), 농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방안(농특위 대통령 보고자료. 2005. 12)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20년(총 17년)
- 사업비 : 15,70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사업규모 : 160마을
- 시행방법
 - 추진방향 및 기본지침 마련(농촌진흥청) → 사업지역선정 및 추진 점검(도농업기술원) → 대상농가선정(시군농업기술센터) → 신규지역 담당공무원 교육(농촌진흥청) → 주택진단 및 설계(농가, 건축설계관련 전문가) → 사업추진(농가)
- 추진내용
 -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민박 가능 농가 또는 공동활용 체험장, 도·농교류가 활발한 일반마을 민박가능 농가 대상

-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 구성요소를 적용한 농촌주택 리모델링
 - 도배, 장판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주택 내부 개선
 - 텃밭, 화단, 장독대, 정원, 생울타리, 건물외벽 녹화 등 옥외 공간 조성
- 최적의 평면형태, 벽체, 단열, 채광, 통풍의 방법 및 기술 등 환경에 적합한 신기술 도입
- 부엌·방의 연결, 다용도 공간 설치 등 편리한 수납공간 배치
- 문화생활, 휴식공간, 손님맞이공간 설치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06년까지는 농촌전통테마마을 민박농가를 중심으로 추진
- '07년부터는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 의거하여 농촌관광이 발생하는 일반마을의 민박가능 농가까지 확대 적용
- 연차별 투자계획('05~'09)

(단위 : 억원)

구 분	5개년('05~'09) 계획					소계
	'05	'06	'07	'08	'09	
사업량	5	5	10	10	20	50
사업비	350	350	1,000	1,000	1,000	3,700
- 국 비	175	175	500	500	500	1,850
- 지방비	175	175	500	500	500	1,85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지표의 목표치 : 보급 마을 수 5마을, 사업 전 대비 마을당 평균 숙박수입 90% 향상
 - 달성정도
 - 보급마을 수는 5마을로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개발·보급	보급마을수	총 보급마을수	마을	5	5	100%

(환경부/수도정책과)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면단위 농어촌 지역에 도시수준에 준하는 상수도를 설치, 양질의 풍부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
- 면단위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16.1%('94)에서 75%('14)까지 제고
※ 16.1%('94)→35.2%('04)→50%('07)→75%('14)

□ 사업의 필요성

- 농어촌 면단위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35.2%, '04)은 전국 평균(90.1%, '04)에 비하여 상수도 보급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면단위 농어촌 지역은 재정이 열악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

□ 사업추진 근거

- 수도법 제2조(책무) 및 제56조(국고보조 등)
 - 수도법 제2조 :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
 -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비용을 보조 및 융자가능
- 농어촌 지방상수도 장기계획('94.1)
- 농어촌 특별세사업 통합지침('96)

2.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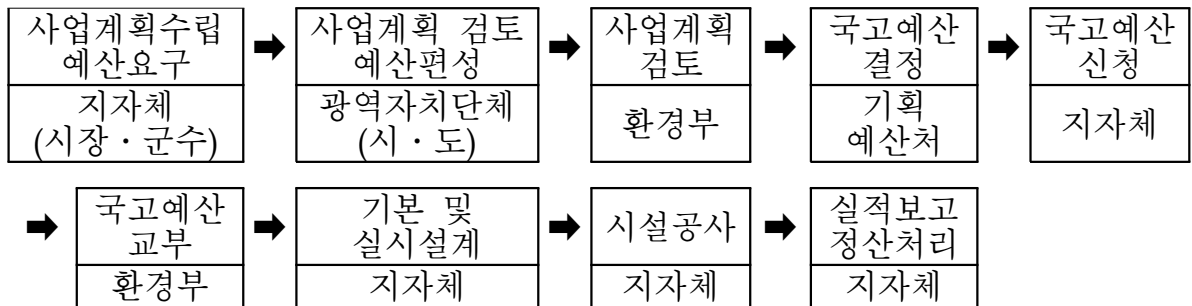
□ 총사업비 : 22,008억원('94~'14년, 21년간 1·2단계로 구분 시행)

□ 1단계 사업('94년~'04년, 11년간) 내역

- 130개 시·군, 370개 면지역에 국비 6,847억원 지원(환특 50%, 교부금 50%)
- 정수장 120개소(총시설용량 : 757.5천 m³/일), 관로 4,749km

- 2단계 사업('05년~'14년, 10년간) 계획
 - 129개 시·군에 국비 15,161억원 지원계획(균특 80%)
 - 정수장 71개소(총시설용량 : 400천m³/일)에 2,914억원 지원
 - 관로 12,451km에 12,247억원 지원

- 사업시행 방법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3. 연차별 추진계획

<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1,467	1,698 (15.8)	2,307 (35.9)	2,483 (7.6)	2,982 (20.1)	3,036 (7.5)	301.4 (17.8)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상수도 보급률은 상수도통계에 의해 발표되는 사항이며, '04년도 상수도 통계가 '06.1월에 발간됨
 - '04년말 성과지표 목표치는 면단위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34%였으나, 상수도 통계('06.1)에 따른 실적은 35.2%로 초과달성
 - '05년말 성과지표 목표치는 36%였으며, 2005년도 상수도 통계 미발간으로 파악 불가(다만, '04년말 35.2%로서 '05년 36%는 무난)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균특회계)	상수도 보급률	(당해연도 누계 수혜 인원/면인구)×100	%	36	35.2 (‘04)	98%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사업추진 근거 및 연혁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9조
- 연 혁 : 농특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시행

목 표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 농촌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 면지역 상수도보급율 : ('04)36.2%⇒('07)50%⇒('14)75%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94 ~ 2014(20년간)

사 업 비 : 총 12,951억원(국고 8,230, 지방비 4,721)

사업규모 : 7,751개소

시행방법

- 지원대상 : 면지역 자연마을중 자연수에 식수를 의존하고 있거나, 간이상수도시설지역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원으로 부적정하거나 식수가 부족한 마을
 - '94~'03 : 50호이상 마을
 - '04~'14 : 20호~49호 마을
- 지원조건 : 1개소당 170억원

○ 재 원 : 국고(균특) 80%, 지방비 20%

※ '03까지 : 국고(농특세) 50%, 지방비(교부금) 5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대상지구 선정절차 : 희망마을 →면→시·군→ 시·도(확정)

□ 추진내용 : 수원공(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정수시설, 물탱크, 송·배수관로, 계량기, 소화전 등) 설치

3. 연차별 추진계획

□ '94~'04 실적 : 4,751개마을 1,032명에게 생활용수급수시설 지원

□ '05~'14 계획 : 3,000개마을에 생활용수공급시설 지원계획

구분	목표	'04까지	5개년계획('05~'09)						'10~'14
			소계	'05	'06	'07	'08	'09	
사업량 (급수인구)	7,751개소 (1,330천명)	4,751 (1,032)	1,512 (162)	346 (47)	266 (26)	300 (30)	300 (30)	300 (29)	1,488 (136)
사업비 (억원)	12,951	7,851	2,560	589	441	510	510	510	2,540
국고	8,230	4,150	2,048	471	353	408	408	408	2,032
지방비	4,721	3,701	512	118	88	102	102	102	508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상수도 보급을 기여도

○ '05년도 목표 기여도는 면지역 농촌주민 34천명에 식수를 공급하여 19%로 계획하였으나 초과 확보한 암반지하수를 인근 마을주민 13천명에게 추가 공급하는 등으로 면지역 농촌지역 상수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균특회계)	사업수혜인원수	당해연도 사업수혜인원수	천명	34	47	138%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

(환경부/생활하수과)

1. 사업목표

- 면 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농어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하수도법 제35조(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업비 : '05년까지 3,055억원(국고기준)
- 사업규모 : '05년까지 58개 처리장 건설지원(완공 18개소)
- 시행방법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국고 70%, 지방비 30%)
 - '95년부터 농특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전입시켜 사업 추진
 -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05년부터 농특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 추진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설치

3. 연차별 추진계획

(백만원/개소수)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예산액(국고)	64,534	66,667	74,600	77,900	84,300
처리장(개소)	44	52	61	63	72

※ 처리장 개소는 계속사업지역 포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02년 : 목표/달성(24.5%/24.5%)
- '03년 : 목표/달성(27.4%/27.4%),
- '04년 : 목표/달성(30.4%/31.9%)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면단위 하수도	하수도보급률	(당해 누계 수혜인원 /면단위 인구수)×100	%	35	31.9 (04)	91%

(소방방재청/재해경감대책팀)

1. 사업목표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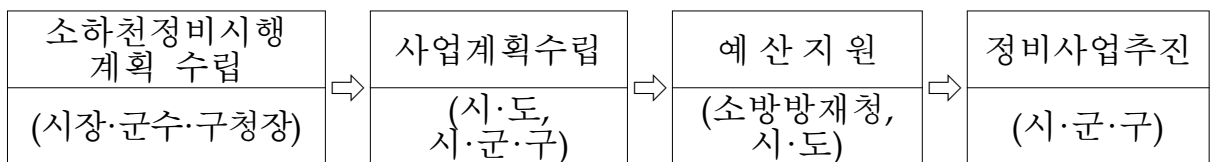
-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소하천을 우선 정비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농어촌지역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
-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하천생태계보전 및 친수환경조성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되도록 다목적 소하천정비로 지역 주민 삶의질 향상 도모

□ 사업추진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 중기 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음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함
- ※ 자연재해저감시설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5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사업추진 체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2016년
- 총 사업비 : 11조 7,001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13,206억원)
- 사업규모 : 25,528km('05년까지 정비연장 : 2,668km)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Matching Fund)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소하천 대상
 - 소하천의 미정비 연장 비율에 따라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 주요 추진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제성(B/C) 및 재해위험도 분석 등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
- 상위 하천과 연계하여 수계별로 완료 위주로 정비 추진
- 투자효과가 낮은 지역은 침수지역 토지매입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 소하천 정비(km)					
- 계 획	192	198	222	232	251
- 달 성	310				
○ 소하천 정비(억원)					
- 계 획	962	994	1,112	1,162	1,256
- 달 성	2,08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소하천 정비사업	정비량	총 정비연장	km	192	310	161%

3-3-2-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부/생활폐기물과)

1. 사업목표

-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만으로는 위생매립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위생매립시설 설치
- 전국 군 단위에 위생매립시설 1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2009년도까지 총 160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지원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폐기물관리법 제52조
- 추진경위
 - '94. 2. 7 : 농업정책심의회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분과위 개최
 - '94. 6. 27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 국무회의 심의
 - '94. 8. 01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공포: '95년도 최초사업시작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 ~ 2009
- 총사업비 : 2,367억원('05까지 기투자액 : 1,748억원)
- 사업규모(사업물량), 연차별 투자실적 : '09까지 160여개 ('05년까지 지원사업 물량 120개소)
- 지원형태 : 군(郡)단위 지자체보조(정액보조 : 15억원/개소)
-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사업집행절차

- 사업계획수립(지자체) → 사업계획검토(환경부) → 국고보조 예산
 편성 및 지원(환경부) → 사업시행(지자체) → 예산편성 실태파악 및
 기술지원, 정산 등(환경부)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5예산	'06예산안	'07	'08	'09	'10
금 액	10,500	10,900	15,000	12,000	12,000	12,000
산출내역	- 2005년 : ▪ 2개소×1,500백만/개소, 8개소×750백만/개소 - 2006년 : ▪ 14개소×750백만원 수준/개소(1개 사업당 15억원이나, 2년계속사업으로 7.5억원 수준에서 지원) - 2007년 : ▪ 10개소×1,500백만/개소 - 2008년 : ▪ 8개소×1,500백만/개소 - 2009년 : ▪ 8개소×1,500백만/개소 - 2010년 : ▪ 8개소×1,500백만/개소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시설사업수	총 시설사업수(누계)	개소	121	120	99%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농림부/친환경농업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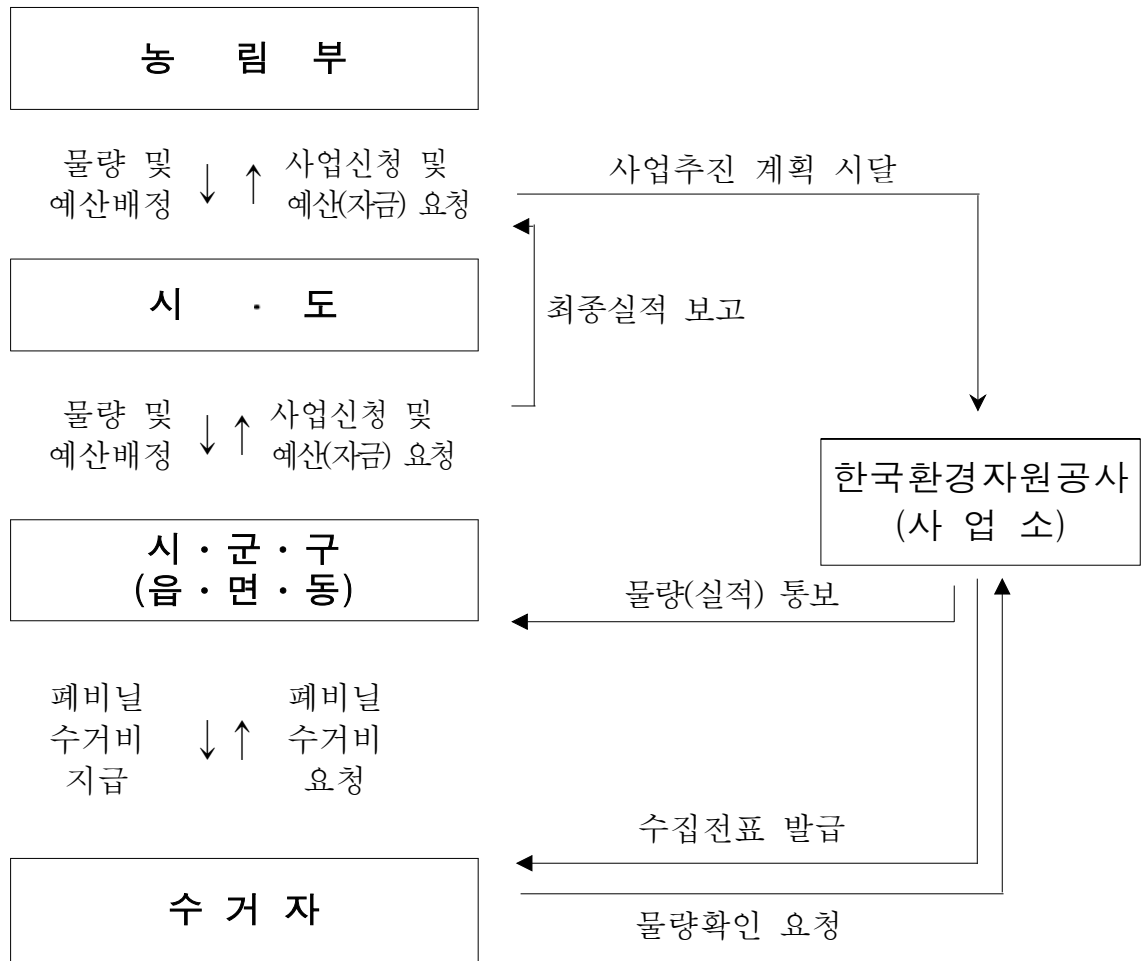
1. 사업목표

- 목표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환경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
 - 폐영농자재 발생량을 줄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 유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폐비닐수거비 지원
-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및 제39조
 - 제8조 : 국가 및 지자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9조 :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 주요내용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수거비 지원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및 책임 강화 유도하기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1년 단위사업)
- 총사업비 : '04년까지 기투자액 51억원(170천톤)
 - '05 사업규모 : 85천톤, 2,550백만원(30원/kg 정액지원, 국고 100%)

□ 수행체계



3. 연차별 추진계획

□ 폐비닐수거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유도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효과 제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과 제	사업량 (톤)	사 업 비					
		계	'06	'07	'08	'09	'10
○ 폐비닐수거비 지원	690	20,700	300	360	420	480	51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05 목표치 : 폐비닐 수거율 56%

□ '05사업성과 : 폐비닐 발생량 265천톤/수거량 165 = 62%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촌폐비닐수거비지원	폐비닐수거율	$(\text{폐비닐수거량}/\text{폐비닐발생량}) \times 100$	%	56	62	111%

(건설교통부/대중교통팀)

1. 사업목표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지역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 지원,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으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 제고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1조

2. 사업내용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에 재위임)
- 사업절차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에 의한 분권교부세 교부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의거 벽지노선 등의 운행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동법 제51조에의거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
- 사업 규모 : 전국 1,570여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및 전국 1,423개 읍면 공영버스 구입 등 지원(대당 1,800만원)
- 사업기간
 - 벽지노선 손실보상 : '82년 ~ (국비지원은 '99년부터)
 - 공영버스 : '94년 ~
- 시·도별 배분내역('0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908	7	108	94	81	194	538	476	369	807	762	671	528	273
벽지보상	3,000	7	90	94	63	86	322	332	207	573	420	293	276	237
공영버스	1,908		18		18	108	216	144	162	234	342	378	252	36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벽지노선 손실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4	30				30	182		212
2005						212		212
(증△감)	△30				△30	증30		-

※ '05년이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분권교부세 30억, 지방비 182억은 추정

- 공영버스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4	19				19			19
2005					-	19		19
(증△감)	△19				△19	증19		-

3. 연차별 추진계획

'04년 국비지원규모를 유지('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

연차별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성과지표(목표)	4,908	4,908	4,908	4,908	4,908	4,908
성과지표(결과)	4,908	4,908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교통서비스 강화						
○ 농산어촌버스운행노선 운영비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30	30	100%
○ 농산어촌공영버스 구입 및 대체차비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19	19	

3-3-3-3

국고여객선 건조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1. 사업목표

사업목표

- 신조 국고여객선 취항을 필요로 하는 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적기에 대체 투입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 이용객 편의제고를 통한 수송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 후생 복지증진을 위한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 사업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1995 ~ 2014

사업비 : '05년까지 28척 대체, 307억원 투입

사업규모 : 매년 낙도보조항로에 취항중인 국고여객선 1~2척 대체

시행방법 : 국고건조(지방청 수행)후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에 위탁관리

추진내용 : 전국적으로 26개 낙도보조항로에 28척의 여객선이 운항중으로 매년 1~2척의 노후선 또는 항로에 부적합한 여객선 대체·건조

3.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내용

- '78 ~ '85(새마을시리즈) : 총 21척 건조
- '86 ~ '94(수요발생시 수시건조) : 총 4척 건조
- '95 ~ 현재(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총 28척 건조

(단위 : 백만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예산	4,642	3,737	3,737	3,177	2,982	2,011	2,814	2,700	1,539	1,677	1,700
척수	5척	4척	3척	3척	3척	2척	2척	2척	1척	2척	1척

중기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06예산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국고여객선 건조 (요구기준)	1,600 (증가율)	3,600 (125.0)	4,000 (11.1)	4,000 (0.0)	4,000 (0.0)	(25.7)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국고여객선 건조 계획 1척 대비 신조 여객선 취항 1척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 10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국고여객선 건조	건조척수	당해연도 국고여객선 건조척수	척수	1	1	100%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농촌지역(면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기반시설을 종합 정비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주의향을 가진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농촌활력 증진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2013
- 총사업비 : 46,858억원(정주기반확충 41,831, 전원마을조성 5,794)
 - ※ 지원조건 : 국고80%, 지방비 20%
- 사업규모 : 정주권개발 대상 800개면(15개 자치구 포함)을 대상으로 정주기반확충 및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
- 추진현황
 - '90~'04까지 1단계 770개면에 대한 지원을 완료(지방양여금)
 - '05~'13까지 2단계 800개면을 대상으로 지원(균특회계)
- 사업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장(제29조 내지 제42조)및 동법시행령 제5장(제31조 내지 제39조의2)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1단계	2단계		
		'90~'04	'05	'06
사 업 량	770	-	-	800
사 업 비	18,960	1,639	1,900	16,152

※ 사업량은 준공기준이며, '05년 338개면, '06년 300개면에 대하여 사업 시행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00% 달성

- 계획 : '05년도 농어촌정주기반확충사업 338개 면 지원
- 실적 : '05년도 338개 정주권면 지원완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사업시행수	총 사업시행 면수	면	338	338	100%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오지개발촉진법('88.12. 31 제정)

○ 사업목표

-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09(5개년)

□ 사업비 : 9,204억원(국비 6,443, 지방비 2,761)

□ 사업내용 : 3,382건

-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영농단지 조성, 공동창고) : 1,461건
- 생활환경개선 및 교통인프라(농로포장, 마을안길) : 1,611건
- 문화복지시설(체육공원, 복지회관 등) : 310건

□ 시행방법

- 오지개발지구 지정고시(시도지사 신청⇒행정자치부장관)
- 사업계획수립(시도지사 수립 ⇒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 관계부처 협의 ⇒ 사업계획 확정)
- 예산지원 (행정자치부)
- 사업추진(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사업(2000~2004)완료
-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2005~2009) 추진중

< 연도별 사업비 지원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 수	7,614	1,124	1,363	1,392	1,359	1,223	1,153	
사업비	계	10,485	1,471	1,852	1,913	2,090	1,588	1,571
	국 비	1,100	-	-	-	-	-	1,100
	양여금	5,983	1,037	1,313	1,347	1,462	824	-
	지방비	3,402	434	539	566	628	764	471

- 2006년도에는 1,083억원을 지원 486건의 사업을 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되는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오지개발촉진사업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건	1,153	1153	100%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도서개발촉진법('86.21.31 제정)
- 사업목표
 - 지리적 여건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소득증대 시설확충을 통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8~2007(10개년)
- 사업비 : 10,717억원(국비7,472, 지방비3,207, 민용자38)
- 사업내용 : 3,963건
 - 생활기반시설(도로,급수,전기시설 등) : 1,819건
 - 생산기반시설(소규모어항시설, 저장시설 등) : 1,879건
 - 문화·복지시설 등(환경, 위생시설, 복지회관 등) : 265건
- 시행방법
 - 개발대상도서 지정고시(시도지사 신청⇒행정자치부장관)
 - 사업계획수립(시도지사 수립 ⇒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 도서개발심위위원회 심의의결 ⇒ 총리보고후 확정)
 - 예산지원 (행정자치부)
 - 사업추진(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 '98~2005기간중 7,076억원 지원, 3,291건의 사업 추진

< 연도별 사업비 지원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비	계	7,076	445	496	686	834	901	1,214	1,286
	국비	4,984	309	346	484	584	631	850	900
	지방비	2,122	136	150	202	250	270	364	386
사업량	3,291	332	345	392	434	442	463	487	396

○ 2006년도에는 1,286억원을 지원, 299건의 사업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되는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도서개발촉진사업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건	396	396	100%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문화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농어촌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 2011년까지 총 750관 건립 목표 (인구 6만명당 1관 수준)

□ 추진근거 및 배경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등)
- '새문화관광정책사업'('98), 농어촌발전종합대책('94)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2.8 / 문화관광부)

□ 예산반영 추이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85	105	176	336	274	312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1년 ~ 2011년

□ 총사업비 : 3,322억원 ('05년까지 지원예산액 398관 1,660억원)

- 사업규모 : 2011년까지 750관 건립 / BTL 사업포함
(’05년 12월 현재 514관 운영 중)
- 사업시행주체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부지대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20%, 농어촌 80%)
- 지원조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3. 연차별 추진계획

- 공공도서관 평균 건립비 50억 규모 가정, 보조율 20%

구 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input type="checkbox"/> 사업물량 (신규 착공관수)	541	37	40	40	40	40	12	750
▪ 재정투자	=514(완공)	29	32	32	32	32	8	
▪ BTL투자	+27(06계속)	8	8	8	8	8	4	
<input type="checkbox"/> 국고소요								
① 재정투자	-	312	320	320	320	320	70	1,662
② BTL투자(임대료)	-	306	306	306	306	306	153	1,683
<input type="checkbox"/> 총계 (①+②)		618	626	626	626	626	223	3,345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공공도서관건립지원 (균특회계)	지원관 개소수	총 지원관개소수(누계)	개소	88	88	100%

3-3-5-2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관광부/생활체육과)

1. 사업목표

목 표

- 중기 계획 : 2008년까지 총 73개소 건립
- 장기 계획 : 군 및 도·농 통합형 시지역의 읍·면지역에 1개소씩 총 140개소 건립

2. 사업내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3~
- 사업시행 주체 : 지방자치단체
- 재 원 : 마사회특별적립금(농림부)
 - 지원기준 : 1개소당 12억원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3,300m²(1,000평)~5,000m²(1,500평)
 - 연 건축면적 : 1,650m²(500평) 정도 규모
- 주요시설 : 다목적 복합시설로 건립
 - 체육시설 :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스포츠교실 등
 - 문화·청소년시설 : 소극장, 청소년실(독서실), 어린이놀이방 등
 - 기타시설 : 회의실, 취미교실, 노인 및 주부교실 등 주민생활시설 등

지원실적('93~'05) : 총 53개소 건립지원

- 매년 2~8개소씩 대상지 선정지원

○ 연도별 지원현황(개소)

'93~'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21	5	7	3	7	4	4	2	53

○ 2005. 12말 현재 완공 48개소, 추진중 5개소

□ 문제점

- '05년도 마사회 특별적립금 우리부 지원액 축소로 동 사업 추진 잠정 중단
- 향후에도 지원금의 확대는 여러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대책

-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지원금 지속 지원 또는 신규 재원 확보대책 필요

3. 연차별 추진계획

□ 마사회의 매출부진 등으로 인한 특별적립금의 지원금 대폭 축소로 2005년 이후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됨

□ 마사회 적립금이 다시 지원될 것으로 예정시 계획은 다음과 같음

연도별 건립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개소	2	2	2	2	2	2
지원금액	24	24	24	24	24	24

※ 향후 농림부의 지원액 규모에 따라 건립계획을 수정할 예정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확충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어촌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	건립 개소수	총 건립개소수	개소	2	-	0%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문화관광부/생활체육과)

1. 사업목표

목 표 : 전국 3,571개 읍·면·동 단위에 2개소씩 설치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1990~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 Matching Fund(국고 50%, 지방비 50%)

설치시설물 : 학교내 야간체육시설,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기구(윗몸일으키기, 철봉),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및 조깅로 등 주민선호시설

3.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내용 : 예산범위내 지속적 추진

추진일정 : 연도별 약 90개소 설치

사업비 : 향후 2,165개소 설치 (약 25년 소요)

(단위 : 억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개소	93	90	90	90	90	
금액	20	30	30	30	30	기금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목표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확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 개소수	총 건립개소수	개소	127	127	100%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사업

(문화관광부/지역문화과)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턱낮은 생활공간을 조성해줌으로써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적 문화불균형 해소.

□ 사업목표

- 도시저소득주민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소외된 지역의 문화향수권을 제고하여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문화참여 유도
- 도농간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여 주민 맞춤형, 생활문화체험공간을 제공
- 기존의 문화공간과는 차별화된 참여자가 주인되는 소비자적 공간 조성으로 소외지역 문화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5 ~ 2005. 12
- 사업비 : 61억('04년 50억, '05년 11억)
- 사업형태 : 민간경상보조
- 사업수행주체 : 전국문화원연합회
- 사업내역 : '04(28개소), '05(11개소)공간조성비 (리모델링 및 장치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실적

(2004년/28개소)

설치지역 (수여대상)	사업명 (크기/소유)	신청기관 (형태/사업)
인천 남구 용현4동 181-2 (도시 저소득층)	교육연극센터 (74평/인천교구천주교회)	인천광역시 남구 (지자체)
광주 북구 동림동 24 (도시 저소득층)	푸른공간 조성 (273평/광주시/임대)	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법인/장애인 복지)
경기 여주군 점동면 당진1리 263-1(농어촌)	시각미술 공방 (100평/여주교육청/임대)	밀머리퍼블릭아트스튜디오 (개인/예술창작)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182-1(도시 저소득층)	평생 문화교육관 (129평/동두천시)	동두천문화원 (문화원/전통문화보존)
경기 가평군 읍내리 432 (농어촌)	가평음악문화관 (150평/가평군)	가평군수(지자체)
강원 원주시 문막읍 부론면 손곡1리 (농어촌)	손곡리 복합문화공간 (177평/개인)	광대패 모두골 (개인/공연예술)
강원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 333 (농어촌)	폐교활용 문화예술교육 스튜디오(150평/평창군)	감자꽃스튜디오 (개인/문화예술교육)
강원 동해시 송정동 849-62 (소외계층)	그루터기 문화공간 (176평/조흥은행/임대)	민예총 동해지부 (법인/문화예술)

설치지역 (수여대상)	사 업 명 (크기/소유)	신청기관 (형태/사업)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지역주민)	오대쌀 축제 문화공간 (60평/장흥4리)	(주)이장 (개인/축제개발)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162 폐광촌 주민)	아리랑관 및 공연장 설치(216평/정선군/임대)	정선아리랑학교 (법인/아리랑교육)
강원 원주시 문막읍 후용 1리 389 (지역주민)	문막예술문화공동체관 (60평/원주교육청)	극단 노뜰 (개인/연극교육)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7리 (농어촌)	평생 문화교육관 (40평/강릉시청/임대)	민예총 강릉지부 (법인/문화예술)
충북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569 (지역주민)	복합문화체험 및 교육관 (299평/영동교육청/임대)	영동 자계예술촌 (개인/연극공연)
충북 청주시 상당구 화산리 161-3(지역주민)	복합문화체험장 (400평/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민예총 (법인/문화예술)
충북 청원군 북이면 광암리 79-24 (농어촌)	농민대상 공연예술문화체험관 (80평/개인)	민예총 충북지회 (법인/문화예술)
충남 서천군 기산면 월기리 270-3 (지역주민)	생활문화공간 (270평/충남교육청/임대)	서천군수 (지자체)
전북 남원시 하정동 185-1 4층 (지역주민)	남원 연극문화의집 (164평/남원시)	한국연극협회 남원지부 (법인/연극)
전북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751-16 (농어촌)	생활친화적 복합문화체험관 (115평/공음면)	공음면사무소 (지자체)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82-2 (농어촌)	주민참여 문화공간 (55평/담양군)	창평면자치발전협의회 (개인/영화관설치)
전남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1110-62 (지역주민)	아트 복지회관 (80평/강진군)	한국메세나협의회 (법인/문화예술)
전남 목포시 상동 845-1 비파2차A 지하상가(지역주민)	비파생활문화센터 (75평/목포시)	목포문화원 (문화원/전통문화)
전남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552 (지역주민)	폐교활용 전통문화체험학교 (290평/곽형수)	곽형수 (개인/육영사업)
경북 상주시 공검면 동막리 69 (지역주민)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8,000평/상주시교육청)	공검평생교육원 (개인/평생교육)
경남 합천군 덕곡면 울지리 86-1 (농어촌)	합천오광대 문화체험관 (100평/동부농업협동조합)	합천군수 (지자체)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02-19 (농어촌)	노인복합문화관 (76평/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거창문화원 (법인/전통문화)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9 (지역주민)	연극놀이 체험관 조성 (80평/경남교육청/임대)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법인/거창연극)
제주 서귀포시 서흥동 636-2 (농어촌)	농촌건강센터 정보문화관 (65평/남성마을회)	서귀포문화원·남성마을 회 (법인/전통문화)
제주 북제주군 우도면 서광리 1393-1 (농어촌)	우도면 문화교육관 (121평/우도면사무소)	우도면사무소 (지자체)

(2005년/11개소)

설치지역(수요대상)	사 업 명	신청기관 (형태/주사업)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개곡2리 562-2 (농어촌)	아름다움 만들기의 전통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진행을 위한 운영시설 및 전시장 확장 보수	아름다움만들기 (개인/문화예술교육)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22 (도시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	개운현대A 입주자대표회의(법 인/지역주민모임)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460(농어촌)	주민 문화활력소 조성사업	부안생태문화센터설립준비위원회 (임의단체/생태문화,기획)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728-4 (농어촌)	진상면 복합 문화체험 도서관	진상새마을 도서관 (개인/도서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어린이, 청소년 및 주민(지역민)	아이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나라 - 아힘나 평화마을만들기프로젝트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민간단체/문화교육복지)
충북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698 (농어촌)	어린이 교육연계형 산간벽지 문화공간 조성사업	자유학교 물꼬 (임의단체/문화예술교육)
경남 사천시 곤명면 작팔리 440 (농어촌)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기회 확대와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큰들문화예술센터 (예술단체/전통문화개발,교육)
전북 익산시 부송동 1069 (도시저소득층)	어린이 문화복지센터 설치사업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법인/사회복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264 (농어촌)	전통기옥을 활용한 생활문화학교 및 지역문화센터 조성사업	장흥문화마당 (지역단체/지역문화발굴교육)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516 (지역민)	문화소외지역 농민과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문화 체험과 시설 개보수 프로젝트	(사)민예총광주지부 (법인/민족문화,문화보급)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1243-8 (농어촌)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예술문화 체험을 위한 함덕 "한모살 문화학교" 설립 운영사업	(사)민예총제주지회 (법인/민족문화,문화예술)

3. 연차별 추진계획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목표년도 기준 110여개 도달치

(단위 : 억원)

구 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계
개관공간수	28('04)+11('05) =39개소	10개소	20개소	20개소	20개소	109개소
기금소요	50억+11억=61억	15억	20억	20억	20억	131억

4.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	공간 개관수	총 공간개관수	개소	10	11	110%

3-3-5-5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부/지역문화과)

1. 사업목표

- 생산적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참여와 자아실현 성취
- 소외계층 특히 새터민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설운영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우수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확대
 -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표준 문화체험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제공 및 지역 민간단체의 지역문화진흥 활동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주체 :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 및 우수 민간 단체
- 주요 프로그램 : 실버프로그램, 새터민, 역사유적탐방, 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자연생태체험, 예술체험·참여 프로그램, 예술·문학 기행 등
 -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관광성 행사는 지양
- 사업대상 : 소외계층의 참여자 선정은 지자체·관련단체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포함
- 사업비 : 7,096백만원 (04년 : 3,664백만원, 05년 : 3,432백만원)

□ 시행절차 : 사업신청(문화관광부) → 복권기금배정(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주관(전국문화원연합회) → 사업시행 및 결과정산(지방문화원) → 평가(복권위원회)

□ 지원실적

년도	지원문화원 수	지원금액 (백만원)	비고
2004년	215개원	1,505	향토문화체험
	50개원	728	우수 프로그램
	16개 지회	1,125	권역별 프로그램
2005년	177개원	1,416	향토체험 프로그램
	97개 프로그램	1,409	부문별 우수프로그램
	10개원	248	노인대상 시범사업
	2개 단체	101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개 지회	40	새터민대상 프로그램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예산범위 내 지속적 추진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06	3,000	800여개 프로그램 × 30명 × 125,0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100개, - 새터민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10개, - 결혼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4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650개
2007	3,500	920여개 프로그램 × 30명 × 126,5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200개, - 새터민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0개, - 결혼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8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610개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08	3,500	920여개 프로그램 × 30명 × 126,5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200개, - 새터민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0개, - 결혼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8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610개
2009	3,500	920여개 프로그램 × 30명 × 126,5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200개, - 새터민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0개, - 결혼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8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610개
2010	3,500	920여개 프로그램 × 30명 × 126,5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200개, - 새터민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0개, - 결혼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8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610개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지방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주민 만족도	리커트 5점척도 설문조사	점	50	63.2	126%

3-3-5-7	산림박물관 건립
----------------	-----------------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1. 사업목표

-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학술연구의 장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업비 : 593억원('05년까지 417억원)
- 사업규모 : 9개소
- 시행방법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 추진내용
 - 산림사료·수목유전자원 표본 등 전시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일정 : 수목원 내 부대시설로 조성

<균특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산림박물관	40	31	40	50	30	25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목표 7개소 / 달성 7개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산림박물관 건립	건립 개소수	총 건립개소수	개소	7	7	100%

3-3-6-1	정보화 마을 조성
----------------	------------------

(행정자치부/서비스정보화팀)

1. 사업목표

-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등 정보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생활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역 특산물 상거래 판매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2014년
- 총사업비 : 1,052억원 ('05년까지 기 투자액 : 1,052억원)
- 사업규모 : 280개 정보화마을 조성
- 시행방법 : Matching Fund(50% 자본보조)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

구 분	계	1차 조성 (‘01.9~‘02.5)	2차 조성 (‘02.10~‘03.6)	3차 조성 (‘04.1~‘04.10)	4차 조성 (‘05.5~‘06.2)
마을 수 ※()은 시도자체	280(39) 개	25(6)	78(3)	88(11)	89(19)
PC 보급	22,429 가구	2,700	7,482	7,037	5,210
정보화교육	97,419 명	18,332	40,606,	27,210	11,271

※ 마을당 약 3.5억원 소요(콘텐츠 구축 1.5억, 센터구축 1억, PC보급 1억)

구 분	1차 조성 (‘01.9~‘02.5)	2차 조성 (‘02.10~‘03.6)	3차 조성 (‘04.1~‘04.10)	4차 조성 (‘05.5~‘06.2)	비 고	
마을 수	25(3)	78(3)	88(11)	89(19)	※()안은 시도자체 조성 마을수	
소 계	8,068	29,377	31,799	26,872	9,107	
운영	국 비 (일반회계)	-	380	1,193	2,372	3,539
조성	국 비 (교부세)	7,000	21,000	20,000	14,000	-
	지방비	1,068	7,997	10,606	10,500	5,568

□ 사업 내용

- 초고속인터넷망, 마을정보센터, 가구별 PC보급 등 정보이용환경 구축
- 마을별 홈페이지 및 중앙 콘텐츠 구축·운영
- 주민 정보화마인드 제고 및 정보화지도자 육성
- 마을별 운영위원회 및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언론매체, 홍보영상물 등을 통한 정보화마을 브랜드 구축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정보화마을 조성 계획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마을수	25 (6)	78 (3)	88 (11)	70	(19)	20 (9)	50	50	50	50

※ ()안은 시도자체에서 조성한 마을 개수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정보화마을 조성 실적은 목표치 초과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정보화마을 조성	마을 조성수	총 마을조성수	개소	70	89	127%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정보통신부/광대역통합망과, 정보보호산업과)

1. 사업목표

-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자금 용자지원을 통해 농어촌 등 정보화 소외지역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간정보 격차 해소
-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농어촌 (읍·면 지역) 및 농공단지 초고속공중망 구축을 중점 지원
- 추진 근거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년부터 ~ 계속
- 총사업비 : 500억원 ('05년까지 기 투자액 : 6,180억원)
- 지원형태 : 용자(재정용자특별회계)
- 지원조건 : 변동금리(재 특 대출 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 도	사업비 (억원)	추진내용	비 고
1999년	1,000	○ 수도권 및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 지역 우선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과 학교, 병원 등 비영리 법인 지원	수요와 확산 (파급) 효과 고려
2000년	1,000	○ 대도시 밀집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축소 ○ 중소도시, 농어촌, 산업단지에 대한 구축지원 확대	국가 균형발전 고려
2001년	1,500	○ 농어촌(읍면지역) 중점 지원 ○ 잔여자금에 대해서는 중소도시 지원	지역간 정보화격차 (Digital Divide) 해소 고려
2002년	800	○ 농어촌(읍면지역) 및 산업·농공단지 중점 지원	
2003년	680		
2004년	700		
2005년	5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달성정도 : 전국 농어촌지역 377만 가구의 95%인 358만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가능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초고속인터넷이용환경 조성	초고속 인터넷 보급 율	초고속인터넷이용가구/ 전국농어촌지역가구	%	95	95	100%

3-3-6-3	정보화인프라 구축 (디지털 사랑방 지원사업 / 농업 경영 체 정보시스템 구축)
---------	---

(농림부/정보화담당관실)

1. 사업목표

-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에 디지털 사랑방 설치 지원으로 농업·농촌 정보화 확산 및 이용확대 기반 조성
- 산지유통기반이 갖춰진 농촌마을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통과 IT의 접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농업인의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도·농간 교류촉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1월~ 12월
- 사업비 : 600백만 원(국비 300백만 원, 지방비 300백만 원)
- 사업규모 : 전국 20개 마을
- 시행방법
 -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도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정보이용시설 설치 등
 - 사업시행 : 지원 대상마을
- 추진내용
 - 농촌마을에 정보접근시설(PC 5대, 프린터 1대, 위성 TV 등)을 설치
 - 마을 홈페이지 구축
 - 정보화마을 입간판 설치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도 별	03년 마을	04년 마을	05년 마을
경기		① 여주군 성신마을 ② 양평군 양 수리 마을	① 연천군 북삼리마을 ② 양평군 진목마을
강원	① 화천군 토마토마을	① 횡성군 봉화마을 ② 평창군 도 원동 마을	① 삼척시 고천마을 ② 영월군 명라마울
충북	① 영동군 모리마을	① 충주시 상대촌마을 ② 청원군 구성마을	① 제천시 장락마을 ② 음성군 방축마을
충남		① 홍성군 상담마을 ② 공주시 방문마을 ③ 부여군 북촌마을	① 논산시 시묘마을 ② 서산시 해성마을 ③ 청양군 수석마을
전북	① 완주군 죽림마을	① 완주군 오복마을 ② 부안군 종 암 마을	① 익산시 고창마을 ② 임실군 명동마을
전남	① 곡성군 칠봉마을	① 나주시 내촌마을 ② 강진군 귀라 마을 ③ 신안군 증서마을	① 함평군 향교마을 ② 해남군 금송마을 ③ 보성군 평 촌마을
경북	① 의성군 사과마을	① 성주군 명간마을 ② 상주시 득수마을 ③ 상주시 지산마을	① 문경시 궁터마을 ② 의성군 대 평 마을 ③ 울진군 매화마을
경남		① 진주시 신촌 마을 ② 창원시 신천 마을	① 남해군 두 모 마을 ② 하동군 영당마을
제주		① 남제주군 의귀리마을	① 북제주군 대림마을
계	5개 마을	20개 마을	20개 마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주민 만족도: '04년 40%에서 '05년 50%로 상승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정보화인프라 구축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점	50	50	100%

3-3-6-4

디지털 어촌 구축사업

(해양수산부/수산경영과)

1. 사업목표

- 정보화교육 인프라구축 및 정보화어업인 육성으로 어촌정보격차 해소 및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사업추진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정보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총사업비 : 200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99억원)
- 사업규모
 - 어업인 원격 영상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31개소)
 - 어업인 정보화교육 : 연간 10,000명('06부터 7천명 유지)
 - 어촌정보화사랑방 600개소(850대) 개설('05년 443개소 완료)
 - 어업인 신기술 교육지원시스템 개발(바다로21 구축완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개소)

구 분	'05까지	'06	'07	'08	'09	'10
· 원격영상시스템유지보수	23개소	31	33	33	33	33
· 신지식공유시스템 구축운영	92개소	92	92	92	92	92
· 어촌정보사랑방 개설	443개소 (443대)	50 (50)	50 (50)	70 (120)	70 (120)	70 (120)
· 어업인단문자서비스 추진	7,738명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 성과목표 달성도

디지털 어촌 개설(PC세트, 현판)

○ 목표치 : 50개소, 실적 : 50개소(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디지털어촌구축사업	구축 개 소수	총 구축 개 소수	개소	50	50	100%

3-3-7-1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림부 / 정보화담당관실)

1. 사업목표

-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도·농간, 산업간 정보화격차 조기 해소
- 영농과 생활에 농업 정보 활용 및 경영정보화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여 정보화를 통한 효과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계속
- 사업비 : '05년 2,553백만 원
- 사업규모 : '05년까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44만 명 실시
- 시행방법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대학 등 교육전문기관
 - 지원방법 및 형태 : 국고 100%(단, 농협은 50%)
- 추진내용
 -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컴퓨터 활용 및 농업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 농업경영정보화 전문교육의 중기과정 및 공모과정 실시로 정보화 능력 심화
 - 이동버스교육, 농업정보119 방문교육 등 농업인들의 정보화교육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방문교육 사후 원격지원 서비스 등 온라인 교육 활성화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06	2,501	농업인 정보화교육(28천명) : 2,089 보조사업자 일반관리 및 기관운영경비 : 185, 위탁관리비 : 227
2007	2,895	농업인 정보화교육(30천명) : 2,450 보조사업자 일반관리 및 기관운영경비 : 205, 위탁관리비 : 240
2008	3,290	농업인 정보화교육(30천명) : 2,810 보조사업자 일반관리 및 기관운영경비 : 225, 위탁관리비 : 255
2009	3,685	농업인 정보화교육(30천명) : 3,170 보조사업자 일반관리 및 기관운영경비 : 245, 위탁관리비 : 270
2010	4,080	농업인 정보화교육(30천명) : 3,530 보조사업자 일반관리 및 기관운영경비 : 265, 위탁관리비 : 285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만족도(5점 척도) : (계획) 78 → (조사결과) 83

○ '05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64,810명 실시(계획 대비 119%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업인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인원	총 교육인원	천명	54.4	64.8	112%
	만족도	리 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점	78	83	

3-3-7-2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	----------------------

(농림부 / 정보화담당관실)

1. 사업목표

- 농업·농촌 정보화촉진을 위해 인근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핵심인력 육성
-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정보화선도자로 지정,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정보화확산 촉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사업비 : '05년 총 사업비 600백만 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05년 농가방문교육 25,500회
- 지원금액 및 형태 : 방문교육 1회당 2만원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각 도 및 시·군)
 - 정보화선도자 선정·관리·교육·홍보 등 사업추진 관리
- 사업수행 : 정보화선도자
 - 해당지역 농가방문 맞춤형교육 실시, 마을단위 정보화시설 운영담당 및 정보화리더 활동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내 역
2006	400	정보화선도자 261명, 농가방문교육 30,400회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2007	500	정보화선도자 300명, 농가방문교육 35,000회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2008	550	정보화선도자 340명, 농가방문교육 38,000회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2009	600	정보화선도자 380명, 농가방문교육 42,000회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2010	650	정보화선도자 420명, 농가방문교육 45,000회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정보화선도자 운영실태 조사 시 방문교육에 대한 만족도 80%

○ '05년 계획 : 정보화선도자 200명 → 정보화선도자 223명(12%증)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정보화선도자 선정	선정인원	명	200	223	112%

(농림부/정보화담당관실)

1. 사업목표

- 농업정보서비스(www.affis.net)를 통해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농업·농촌정보화를 촉진
 - 농업인의 농산물 출하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유통효율화 지원
 - 농림부와 유관기관의 농림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여 제공
- 사업추진근거
 - 농업 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 정보화)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법률 제8조 3항(농어민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 사업자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 ~ 계속
- 사업비 : '06년 2,946백만 원
- 사업규모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농업농촌 콘텐츠 제공, 농림지식검색시스템 구축·운영
 -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정보 수집제공 등
- 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추진내용
 - 농업정보서비스 등 보조사업(신선물, 농업인정보화교육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통신망 관리
 -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농촌 콘텐츠 확충
 - 아피스 와 출하지원시스템 콘텐츠 통합 및 정보자원 최적화
 - 농림부를 비롯한 30개 농림유관기관의 137개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류하여 제공

3.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방향

- 아피스 포탈(Affis.net)과 출하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자원을 최적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운영
- 시·도·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농림정보를 수집·확충
- 농업인을 비롯한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만족도 제고
- 농업·농촌관련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 제공 및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	추진내용
2006	2,946	- Affis.net과 출하지원시스템과의 통합 및 정보자원 최적화 등 - 농림지식검색시스템 콘텐츠 구축 및 운영비
2007	4,000	- 농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 정보자원 노후화에 따른 아웃소싱 추진 - 농림지식검색시스템(2단계) 구축 및 운영비 · 국가지식 포탈 과 연계 및 이용자 편의위주의 기능개선
2008	4,000	- 농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 농림지식검색시스템(3단계) 구축 및 운영비 · 시도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확대
2009	5,000	- 농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 농림지식검색시스템 운영비 · 지식정보이용 확대 및 농림유관기관 연계 지속 확대
2010	5,500	- 농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 농림지식검색시스템 운영비 · 지식정보이용 확대 및 농림유관기관 연계 지속 확대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93%이상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농어업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일평균 순이용자수	이용자수	명/일	8,000	7,460	93%

3-3-7-5

어업인 정보화 교육

(해양수산부/수산경영과)

1. 사업목표

- 어업인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을 통해 어촌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어촌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률 제11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총사업비 : 200억원('05년까지 투자액 : 1,460백만 원)
 - ※ 어업인정보화 교육은 디지털어촌구축사업의 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디지털어촌구축 사업비임
- 사업규모
 - 시행대상 : 어업인
 - 사업규모 : 210천명('06년 7천명, '08년부터 5천명)
 - 사업(업무) 내용 : 기초, 경영, 원격교육 등으로 세분하여, 전문강사 및 교재제작, 교육컨텐츠 제작 등을 통하여 연간 5천명~10천명의 어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명)

구 분	'05까지	'06	'07	'08	'09	'10
·어업인정보화 교육	71	7	7	5	5	5

4. 성과목표 달성도

어업인정보화 교육

○ 목표치 : 10,000명, 실적 : 14,155명(141.6%)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어업인정보화교육	교육수혜자수	총 교육수혜자수	천명	10	14	142%

제4절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4-1-1-2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	--------------------

(농림부/농촌사회과)

1. 사업목표

-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2014년
- 사업비 : 150억원(보조 120, 지방비 30)
 - '05년 예산 미확보 사업추진이 안됨
- 사업규모 : 200개 향토자원 개발·연구
-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 사업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3. 연차별 추진계획

- '05에는 10개 과제의 향토 상품개발 및 연구, 그 이후 매년 20개 과제씩 향토 상품개발·연구 추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보조(균특)	6	12	12	12	12

□ 산출근거(보조금)

(단위 : 억원)

년 도	사업비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20	
'05년	6	상품개발·연구(75백만 원*10개*80%)
'06년	12	상품개발·연구(75백만 원*20개*80%)
'07년	12	상품개발·연구(75백만 원*20개*80%)
'08년	12	상품개발·연구(75백만 원*20개*80%)
'09년	12	상품개발·연구(75백만 원*20개*80%)
'10년이후	66	상품개발·연구(75백만 원*110개*8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05년 목표달성도 : 2005년도 예산 미확보로 달성도 없음

※ 예산 확보 실패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취소하고 기존의 지역특화사업에 단위사업을 신설하여 향토 산업을 육성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향토자원 소득 화 사업	향토 상품개발 및 연구	개발 연구된 총 향토 상품 수	개	10	미 제출	0%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	---------------------

(농림부/농촌사회과)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4 ~ 2014년
- 사업비 : 10,006억원(보조 6,682, 용자 3,324)
 - '05까지 기투자액 6,377억원(보조 3,701, 용자 2,676)
- 사업규모 : 400개소('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314개소)
-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용자(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등 지원
 - 지원조건 : 평당 정액지원

(단위 : 천원/평)

구 분	일 반 농어촌	추가지원 농 어 촌	우선지원 농 어 촌	전문단지 등	
				일 반 농어촌	추가·우선 농 어 촌
· 국비보조	15	50	70	30	70
· 국비용자	10	20	20	20	20
· 지방비보조	5	10	10	10	10
합 계	30	80	100	50	100

* 용자 : 연리 5.0%(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잔여사업비는 지방비로 총당

3. 연차별 추진계획

'05~'09까지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계	6,377	260	250	250	300	2,569
-보조(균특)	3,701	260	250	250	250	1,971
-용자(농특)	2,676	-	-	-	50	598

산출근거(보조금)

(단위 : 억원)

년 도	사업비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6,682	
'05년까지	3,701	
'06년	260	신규 7지구, 계속 13지구, 준공 8지구 보조소요액 반영 (28지구)
'07년	250	평당 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08년	250	평당 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09년	250	평당 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10년	250	평당 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10년이후	1,721	평당 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05년 목표달성도 :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 조성 수	총 사업 조성 수	개소	9	9	100%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
----------------	-----------------------

(노동부/능력개발지원팀)

1. 사업목표

-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 도모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경제위기 이후 구조적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에 대한 취업능력 제고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1. 1 ~ 12. 31
- 사업비 : 13억원
- 사업규모 : 1,000명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훈련실시 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소정 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 훈련인원(명)	1,000	864	864	864	864
○ 예산(백만 원)	1,344	1,344	1,384	1,426	1,469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2005.12월 현재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의 취업률은 47.6%(잠정치)로서 성과목표 46.9%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목표대비 101.5%를 기록하여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됨.

※ 성과목표(취업률) : 46.9%

※ 사업실적(2005.12월 현재) : 47.6%(잠정치)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 어업인 고용촉진훈련	취업률	$\frac{\text{조기취업자 수} + \text{수료 후 취업자 수}}{\text{조기취업자 수} + \text{수료인원}} \times 100$	%	46.9	47.6	101%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증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년 ~ '09년
- 총사업비 : 451억원
- 사업규모 : 451개
-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지원조건 : 마을당2억원, 국고 50% ·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시장·군수 등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추천(시·군→시·도) → 대상마을 선정(시·도) → 예산지원(농림부→시·도→시·군) → 사업시행(시·군)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마을)
- 지원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의 농촌체험 기반 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 조성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재원	'04까지	5개년('05~'09) 계획					
		'05	'06	'07	'08	'09	소 계
사업량	76	47	67	80	90	91	451
단가		-	-	-	-	-	
사업비	76	47	67	80	90	91	142
국 비	76	47	67	80	90	91	142
- 보조	76	47	67	80	90	91	142
- 융자		-	-	-	-	-	-
지방비							
자부담 등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방문객수 및 농촌관광매출액 '05년 목표치 대비 증가 달성

- 마을 방문객수 ('05)목표치 510천명 대비 실측치 994천명
: 목표치 대비 195% 증가
- 농촌관광매출액 ('05)목표치 75억원 대비 실측치 111억원
: 목표치 대비 148% 증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방문객수	총 방문객수	천명	510	994	171%
	매출액	총 매출액	억원	75	111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	-------------

(농촌진흥청/농촌생활자원과)

1. 사업목표

- 농촌전통자원의 발굴 활용으로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바람직한 농촌생활문화 정착과 화합·협동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2008년
- 사업량·사업비 : 160마을 320억(국·지방비 각 50%)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보조율 100%)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2~'05) : 66마을 11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02	9	9	4.5	4.5
'03	18	27	13.5	13.5
'04	18	36	18	18
'05	21	40	20	20
계	66마을	112	56	56

※ 개소 당 2억원(1억 원씩 2년 지원), 국·지방비 각 50%

- 마을별 고유의 전통문화자원과 자연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테마 발굴
- 마을 고유테마를 기반으로 대상별, 계절별, 체류기간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농촌다운 경관 유지 보전과 휴양·학습·체험 기반시설 정비
- 소득 창출 및 다각화를 위한 상품 개발
- 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 업무발전 연찬회, 워크숍, 평가회 등 전문교육 실시 : 55회 2,557명
 - 포탈사이트 및 마을별 홈페이지 제작 : 66마을
 -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 전문교육과정 개설 운영
 - 농촌관광·어메니티 관련 연구지원
 - 농촌 어메니티 자원도 구축(농자연, '05~'08) : 600지역 1,230읍면
 - 농촌 마을 어메니티계획 모델 개발, 경관지표 및 생태문화자원 관리지침 개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전통지식자원 발굴, 농특산물 자원 개발 등
 -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 농산어촌체험마을 관련부처와의 연계 및 협조
 - 유관기관 지원사업, 지도기관 시범사업 등 유치
 - ※ 테마마을 지원사업비는 가급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비로 집행 권장
 - 내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사업진단 및 성과평가
 - 정부업무평가('04~'05),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05.4월), 정부업무 특정과제 평가('05.7월), 외부 전문가에 의한 테마마을성과평가('05.8월)

3. 연차별 추진계획

- 시군(센터) 당 1개소씩 160개 마을을 2008년까지 완료하고 사후 관리에 중점
- 2005년 현재 66개소 완료, 2006~2008 94개소 조성계획
 - ※ '06지원 : 50개소('05:19, '06신규:31) 50억원(개소 당 1억원)

구분	계	'05까지	'06예산	'07	'08	'09	'10
사업량	160	66	31	33	30	(30)	-
사업비	319	112	50	64	63	30	-

- 지원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개발 및 연계('06~'10)
 - 민박 리모델링, 농촌체험 네트워크, 농촌체험 교육농장 시범 등

4. 성과목표 달성도

- '05년도 성과목표 : '04년 대비 추가농가소득 증가율 20%
 - 성과목표 계산
 - '04년도 총 추가농가소득 : 2,211,396천원(평균 49,142천원)
 - '05년도 총 추가농가소득 : 4,281,260천원(평균 64,868천원)
 - 추가농가소득증가율 : $(64,868 \div 49,142) \times 100 = 132$
- '04년 대비 추가농가소득 증가율은 32%가 증가하였으므로 성과목표 20%를 초과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추가농가소득 증가율	$\{(\sum \text{당해년도 연간추가농가소득} / \text{당해말 테마마을총수}) / (\sum \text{전년도 연간추가농가소득} / \text{전년도 테마마을총수})\} \times 100$	%	20	32	160%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문화관광부/공간문화과)

1. 사업목표

- 5천년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의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꾸고
-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 등 정주민족도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2009년(1개 마을당 사업기간 : 2년)
- 사업규모
 - 9개 도를 대상으로 각 도에 1개 마을 조성 원칙, 지자체 희망 시도 단위 사업비(30억원 : 기금 20억, 지방비 10억)내에서 2개마을 조성 허용
- 사업 주요내용
 -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
 -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 상품 개발, 역사마을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사업비 : 255억원(관광기금 170억원/지방비 85억원)

- 각 도별(1~2개 마을) 30억원(기금 20억원 · 지방비 10억원) 지원
 - 기금 보조금(20억원)에 대한 지방비 50%(10억원) 분담 조건
- 지원형태 : 민간경상 ·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 : 전국문화원연합회(문화 · 역사마을 가꾸기 심의위원회)
 - 간접보조사업자 : 지방문화원(문화 · 역사마을 가꾸기 OO추진위원회)
- 지원근거 : 관광 진흥개발 기금 법 제5조

□ 추진내용

- 지원사업 선정현황 : 7개도 10개 마을

도	시·군	해당마을	기금지원 규모(안)	사업선정 년도	지원시기	추진내용
강원	원주 시	회촌마을	10억원	05년	05.12	기초조사 중
	강릉 시	학산마을	10억원	"	"	"
충남	서천군	동자북마을	20억원	"	"	"
전북	정읍 시	원촌마을	7억원	"	06이후	-
	고창군	사등마을	13억원	"	"	-
전남	영광군	효동마을	20억원	04년	05.04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중
경남	통영 시	문어포마을	7억원	05년	05.12	기초조사 중
	의령군	입산마을	13억원	"	06이후	-
경북	안동 시	군자마을	10억원	04년	04.12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완료
제주	서귀포 시	법환마을	20억원	"	05.04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중

- 추가 선정계획 : 2개도(경기, 충북 / 06년 하반기 선정)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선정(도)		9	1	6	2	-	-
사 업 비	계	25,500	1,500	4,500	5,250	6,750	7,500
	기금	17,000	1,000	3,000	3,500	4,500	5,000
	지방비	8,500	500	1,500	1,750	2,250	2,500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

연 도	추진계획 및 내용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지침 확정 • 지원사업 선정(3개도 3개 마을) • 예산지원(1개도 1개 마을 / 안동) • 실무자 및 마을주민 교육, 워크샵, 선진지 견학(지속적 실시)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보완 및 추가지침 통보 • 지원사업 모니터링 • 지원사업 선정(4개도 7개 마을)
200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추가선정(2개도/’06) • 지원사업 중간평가 및 정기 감사 실시 •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초기 선정마을 사업완공 및 사업 홍보강화 • 실무자 및 마을주민 교육 강화 • 사업평가 피드백을 통한 정책 및 사업 반영

4. 성과목표 달성도

□ 사업수행 과정 중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만족도 5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문화역사마을 조성	주민만족도	리커트 5점척도 설문조사	%	40	50	125%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1. 사업목표

- 추진경위 : 한·중·일 어업협정 등 어업질서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독특한 생활환경을 관광 자원화 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
- 지원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사업비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목표
 -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등과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년 ~ ('13)년
- 총사업비 : 609 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359억원)
- 사업규모 : 112개 마을('05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58개 마을)
-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국비50%, 지방비45%, 자담5%)
- 추진내용 : 총사업비 609억 원 중 '02년부터 '05년말 까지 359억원 (국고지원 180억원)을 투자하여 112개 마을 중 58개 마을 지원(지원율 52%)
 - * '05년말 까지 32개 어촌체험마을 조성 완료(시범마을 9개 포함)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01시범사업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이후	
사업량	112	9	8	11	12	18	17	37	
사업비	계	60,922	9,422	4,000	5,500	6,000	11,000	13,800	18,500
	보 조	30,461	4,711	2,000	2,750	3,000	5,500	6,900	9,250
	지방비 자부담	27,415 3,046	4,240 471	1,800 200	2,475 275	2,700 300	4,950 550	6,210 690	8,325 925

※ 개소당 사업비가 5억원이었으나, 균특회계 로 사업비 증액 투자함에 따라 총사업비 증가예정

□ 시·도별 마을조성실적 및 계획

구 분	총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9	1		2	1	1		1	1	1	1
2002	8	-	-	1	1	1	1	1	1	1	1
2003	11	1	1	1	1	-	1	2	1	2	1
2004	12	-	1	1	1	1	1	3	1	2	1
2005	18	-	1	2	1	3	1	5	2	2	1
소계	58	2	3	7	5	6	4	12	6	8	5
2006 계획	17		1	1	1	1		7	1	4	1
'07이후	37	-	1	-	2	3	4	2	12	3	6
총 계	112	2	5	8	8	10	8	21	19	15	12

4. 성과목표 달성도

□ '05년 마을당 평균방문객수는 120,218명으로 목표(96,525명)대비 125%달성('04년 대비 37%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어촌체험마을 조성	방문객수	방문객 총수/체험마을 수	천명	96	120	125%

4-2-1-5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1. 사업목표

-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자연경관 등 관광여건이 구비된 어촌의 환경 재정비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어촌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어촌관광 대중화 유도
- 생산기반 위주의 소규모 지원에서 탈피, 고품격 어촌어항 복합 공간 조성
- 어촌관광 잠재력의 집중개발로 특성화된 해양관광 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09년
- 총사업비 : 4,372억원
- 사업규모 : 전국 24개소(I 모델 7개소, II모델 6개소, III모델 11개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또는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시·군·구)
- 사업내용 : 어촌어항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어촌관광 시설
 - 유람선(모터보트 포함)·낚시터·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어촌관광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어촌관광통합모델 기본설계 8개소 완료

- 제Ⅰ모델(어촌어항 복합 공간) : 2개소(정자 항, 양포 항)
- 제Ⅱ모델(다기능어항) : 4개소(대변, 지 세포, 국동, 흥원 항)
- 제Ⅲ모델(어촌관광단지) : 2개소(대송 항, 전촌 항)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어촌관광활성화사업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개소	8	8	100%

(산림청/휴양정책과, 산림환경 보호 과)

1. 사업목표

< 산림휴양 공간 조성 >

추진근거

- 산림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
- 산림기본법 제4조 및 제20조

사업목표

- '10년까지 자연휴양림 140개소(국가 41, 지자체 79, 개인 20), 산림욕장 150개소(국가 2, 지자체 148) 조성

< 수목원 조성 >

- 식물자원의 수집·보전으로 생물다양성보전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생물유전자원확보 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

2. 사업내용

< 산림휴양 공간 조성 >

- 사업기간 : 1988~2010
- 총사업비 : 5,148억원('04년까지 기투자액 : 2,158억원)
- 사업주체 : 국가 및 지자체
- 지원형태
- 국유자연휴양림 : 국비 100%

- 지자체 자연휴양림
 - 신규조성 30억(국가 70%, 지자체 30%)
 - 보완사업 4억(국가 50%, 지자체 50%)
- 산림욕장 : 4억(국가 50%, 지자체 50%)

< 수목원 조성 >

- 사업기간 : 1992년 ~ 계속
- 사업비 : 1,007억원('05년까지 561억원)
- 사업규모 : 19개소
- 시행방법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 추진내용
 -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 학습장 제공

3. 연차별 추진계획

< 산림휴양 공간 조성 >

- 연차별 추진내용

산림휴양시설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자연휴양림	98개소	107개소	116개소	125개소	133개소	140개소
국유자연휴양림	31	3	2	2	2	1
지자체자연휴양림	50	5	6	6	6	6
개인자연휴양림	17	1	1	1	-	-
산림욕장	102개소	8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책특)국유자연휴양림조성	21,391	21,391	21,391	21,391	21,391
(균특)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17,555	22,700	29,700	38,600	50,180

< 수목원 조성 >

□ 연차별 추진일정 : 시·도별 1개소 이상 연차적으로 조성

<균특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 공립수목원	86	125	181	107	130	145

4. 성과목표 달성도

< 산림휴양 공간 조성 >

□ 자연휴양림 이용객 만족도 조사

○ '04년 72점, '05년 75점 , '06년 79점 목표

< 수목원 조성 >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목표 16개소 / 달성 16개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산림휴양 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 산림휴양 공간 조성	휴양만족도	· 취득점수10-5.0 · {Σ취득점수/(70×설문대상지수)} ×100	점	75	75	100%
○ 수목원 조성	조성수	총 조성수	개소	16	16	

(문화관광부/관광자원과)

1. 사업목표

추진근거 및 배경

- 국민관광수요 급증과 관광시장 다변화에 따라 1999년부터 문화관광 자원 개발 사업 추진
- 관광 기본법 제9조, 관광 진흥법 제46조, 제71조
- 관광 진흥5개년계획(99.1)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관광 자원 발굴
- 관광 진흥5개년계획('04.3) : 지역밀착형 특화관광 개발 및 지역간 연계 개발 추진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과제('03.12) : 다양한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목적

-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문화·관광레포츠자원을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1999 ~ 계속

소요예산 : 균특회계 (연도별 사업 심의를 통하여 예산 확정)

사업내용

- 대상자원 :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관광레포츠, 이벤트 등 자원
- 주요내용 : 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관광시설 등)

관련부서 및 기관 : 16개 지자체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5년도부터 균특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지자체 실링내에서 자율 편성에 의해 대상사업 및 사업비 확정

4. 성과목표 달성도

- 균특회계법에 의거 16개 광역지자체 실링내에서 자율편성에 의한 시·군·구 지자체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는 측정이 불가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개발건수	총 개발건수	건수	116	미제출	0%

4-2-1-9

저수지 수변개발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및 연혁

- 지원근거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보전)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제36조(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자금지원)

○ 연 혁

- '04.2월 : 농업농촌종합대책 중장기계획에 반영
- '04.12월 : '05년 저수지수변개발 기본조사예산 확보
 - ※ 5지구 375백만원(도농교류센터운영비내의 도농교류계획 수립비)
- '05.5월 : 우리부 자체 '06예산신청에 대한 심의회에서 '05년 기본계획수립 후 이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라 '07년 신규사업예산 편성 여부를 판단키로 함
- '05.6~12월 :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평가
 - '05.6.16~7.1 : 기본조사 예정지 선정 자문위원회 현지실사 및 5개지구 선정(지자체 신청 총지구수 : 8개지구)
 - ※ 강원 강릉시(장현저수지), 충북 음성군(원남저수지), 충남 서천군(동부저수지), 전북 장수군(동화저수지), 전남 영광군(불갑저수지)
- '05.7~12월 : 5개지구 기본계획 수립
 - '05.12.16 외부전문가 회의에서 사업타당성 평가결과 사업 타당성이 큰 것으로 평가
 - ※ IRR = 22~43.4% > 5.5%(시중금리)
 - B/C(i=5.5%) = 3.39~9.03, B/C(i=8.0%) = 2.64~6.98

□ 목 표

-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레저공간을 제공, 도농교류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 ⇒ 생태공원, 체험농장, 산책로, 체육공원, 진입도로 등 휴식 및 레저공간의 기본적인 기반조성 후 민간투자 유도
- '07~'10년까지 4년간 기본계획 수립된 5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및 사업평가 후 계속사업 여부 판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7~ '10(4년간)

□ 사 업 비 : 총 300억원(국고 30, 지방비 30)

□ 사업규모 : 5지구

□ 시행방법

- 지원대상 : '05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5개지구
- 지원조건 : 1지구당 60억원
- 재 원 : 국고(균특) 50%, 지방비 50%
 - ※ '03까지 : 국고(농특세) 50%, 지방비(교부금) 5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대상지구 선정절차 : 희망마을 →면→시·군→ 시·도(확정)

□ 추진내용 :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주변에 생태공원, 산책로, 체육공원, 진입도로 등의 휴식공간 및 접근로 정비

3. 연차별 추진계획

- '05년 실적 : 5개지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평가
- '06년 계획 : 신규사업 심의·확정 및 '07예산(농특회계) 확보

구 분	목 표	'04 까지	5개년계획('05~'09)						'10~'14
			소 계	'05	'06	'07	'08	'09	
사업량	지구 5	-	5	5지구 기본조사	신규사업 확정	5지구 착공	5지구 계속	5지구 계속	5지구완공 사업타당성 평가
사업비	백만원 30,000 (375)	-	25,000 (375)	- (375)	-	5,000	10,000	10,000	5,000
국 고	15,000 (375)	-	12,500 (375)	- (375)	-	2,500	10,000	10,000	5,000
지방비	15,000	-	12,500	-	-	2,500	10,000	10,000	5,000

* ()는 기본조사비(농특회계) 외서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사업 착수 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평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저수지수변개발사업	추진지구 수	당해 기본계획수립 완료 지구 수	지구	5	5	100%

4-2-2-1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농산어촌관광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인 붐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09년
- 개최주기 : 격년
- 지원조건 : 행사당 10억원, 국고 100%
* '05년 695백만원(마사회기금 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 지원내용 : 전시기획, 농산어촌마을체험관 등 전시부스마련, 참가마을 및 기관·업체 모집, 홍보·마케팅 등 행사진행·총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회('05)	2회('06~'07)	3회('08~'09)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3	1	1	1
사업비	계	2,700	700	1,000	1,000
	보 조	-	-	1,000	1,000
	기금 등	-	700	-	-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지표 목표(70%)대비 80%이상으로 나타나 목표 달성

- 참가자 재 참가 의향 : 참가(83%), 불참(12%), 잘 모름(5%)순

* 2005. 5. 1. 전시참가자 44명을 대상으로 설문면접

- 관람객 재방문 의향 : 방문하겠음(84%), 잘 모름(15%), 방문안함(1%)

* 2005. 4. 27 ~ 5. 1(5일간), 관람객 중 무작위로 선정(700명)하여 설문면접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관광박람회 개최	재참가 의향률	(재참가 의향자수/전체참가자수) ×100	%	70	83	120%
	재방문 의향률	(재방문 의향자수/전체관람객수) ×100	%	70	84	

4-2-2-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다양한 홍보·이벤트를 강화하여 농산어촌체험관광 수요 창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 이후(계속)
- 재원형태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도농교류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도농교류센터, 농림부)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도농교류센터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 사업내용
 - 신문,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농산어촌체험마을의 홍보·마케팅
 -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개최 및 1도1촌 우수마을 지정
 - 그린맵 제작·배포,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 초등학교 교사·학생 농촌체험행사, 농촌체험관광우수여행사 공모전
 - 농촌관광 포털 사이트운영,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홍보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등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 등	소계		
2005	780	-	-	-	780	-	-
2006	800	-	-	-	800	-	-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방문객수 '05년 목표치 대비 증가 달성
- 마을 방문객수 ('05)목표치 510천명 대비 실측치 994천명
: 목표치 대비 194% 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체험관광 홍보	방문객수	녹색농촌체험마을 총 방문객수	만명	51	99	194%

4-2-3-0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구축
---------	-----------------------------------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민간 부분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사후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부터
- 재원형태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 추진내용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실무협의회 운영, 지자체 장이 주도하는 그린포럼, 1인1촌전문가 지원시스템 운영,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평가회 및 사후지원·관리
- 추진체계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실무협의회 운영(비 예산) : 부처합동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통합지침('04.11)'을 마련, 농림부가 주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 기타 : 사업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도농교류센터, 농림부)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도농교류센터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5	'06
그린포럼	25	25
1인1촌 전문가지원	77	190
사업평가회	13	30

* 관계부처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실무협의회 운영 : 비예산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전문가 컨설팅 횟수'는 '05년에 200회를 목표로 하여, '05.12월까지 227회를 실시하여 당초 목표의 113.5%를 달성(13.5% 초과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구축	민간전문가 컨설팅 횟수	1인1촌 전문가지원시스템에 참여하는 전문가컨설팅 횟수	회	200	227	114%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화관광부/관광산업과)

1. 사업목표

-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 향토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축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집중 육성, 유망축제 발굴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 계속
- 사업비 : 2,500백만 원(2005년도)
- 사업규모 : 문화관광 축제 45개 선정 지원
- 시행방법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율지원(관광진흥 개발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절차 : 문화관광 축제 추진계획 수립 시달(문화부→시·도) → 사업계획 수립(축제추진주체) → 사업신청(시·군·구) → 문화 관광 축제 추천(시·도→문화관광부) → 문화관광 축제 선정 및 등급결정(문화부) → 예산지원(문화부→시·도→시·군·구) → 사업시행 및 문화관광 축제 개최(시·군·구) → 사업평가 (문화부 등) → 평가결과 다음해 선정 시 피드백

□ 추진내용

-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집중 육성 : 2,14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3개축제, 각 250백만원
 - ☞ 안동탈춤국제페스티벌,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 우수축제 : 7개축제, 각 130백만원
 - ☞ 춘천국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함평나비축제, 금산인삼축제 등
 - 지역육성축제 : 8개축제, 각 60백만원
 - ☞ 한산모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등
 - 유망축제 발굴 지원
 - 특색있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예비축제 중 평가우수 축제)
 - '05년 9개 축제 360백만원(40백만원씩)
 - ☞ 파주장단 콩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지리산한방 약초축제 등
 - 예비축제 : 18개, 예산 지원 없이 행정지원, 평가대상
 - ☞ 하이서울페스티벌, 강화고인돌문화축제, 울산외고산옹기축제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본방향 : '06~'10년 기간 중 전국 600여개 축제 중 문화관광대표 축제를 연 20개로 지정 운영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06예산	'07요구	'08요구	'09요구	'10요구
3,900	4,200	6,500	6,500	6,5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달성도 : 목표치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향토문화관광축제 육성	관람객수	1개축제당 관람객수×45개축제 (문화관광 축제)	백만명	24	32	133%

4-3-1-0

경관보전 직불제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소득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 적극적인 농촌경관 형성시책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거양)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13
 - 2005~2007기간 중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방안 보완
- 총사업비 : 380억원(국고 265, 지방비 115)
 - 21,330ha, 170만원/ha(국고 70%, 지방비 30%) 지원
- 추진현황 : '05년 시범사업으로 470ha 신규 착수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농업인
- 사업추진절차 : 대상지역 신청(주민→시·군→시·도→농림부) →대상지역 선정(농림부→시·도→시·군)→경관보전협약 체결(지자체와 마을간)→이행상황점검 및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내용

- 대상지역 : 읍·면지역 및 자치구의 준 농촌지역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1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 사업내용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 * 경관작물 :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은 원칙적으로 제외
 - 직 불 금 : 170천원/10a(국고 70%, 지방비 30%)

3. 연차별 추진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목 표	'05까지	'06계획	'07~'13	비 고
사 업 량 (ha)		21,330	470	470	20,390	
사업비	계	38,000	840	840	36,320	
	국 고	26,500	600	600	25,300	
	지방비	11,500	240	240	11,02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5.9~12월 기간 중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 평창군 봉평면은 효석문화제 기간중 57만명, 고창군 공음면은 메밀축제 기간중 20만명, 부안면은 국화꽃축제 기간중 15만명이 방문하여 약 26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평창군 봉평면에서 '05.9월 개최한 효석문화제 방문동 기중 '메밀꽃을 보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메밀밭, 들국화밭 등을 방문한 도시민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
 - *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의 경우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도 있을 정도로 지역 사회의 유지 또는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큼

○ '05.12~'06.1 기간 중 실시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 지급단가(170만원/ha)에 대하여는 만족 47%, 불만 53%로서, 지급단가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필요
- 소득효과에 대하여는 긍정적 65%, 보통 19%, 부정적 13%로서 전체응답자의 84%가 비교적 만족하고 있음
- 경관향상효과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92%가 만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경관보전 직불제	농업인 및 도시민 만족도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	80	68	85%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 숲 조성

(산림청/산림환경 보호과)

1. 사업목표

- 자생식물자원의 현지 내 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숲 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으로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사업비 : 1,134억원('05년까지 316억원)
- 사업규모 : 자생식물식재 연 55km, 생태 숲 16개소
- 시행방법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 추진내용
 - 지역별 특색 있는 향토 자생식물 식재 및 자연림의 원식생 복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일정 : 시·도별 1개소 이상 연차적으로 조성

<균특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 숲 조성	94	128	150	175	180	185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목표 16개소 / 달성 16개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조성개소	총 조성개소수	개소	16	16	100%

(농림부/농촌정책과)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의 농업외적 개발로 농촌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
 - 휴양시설, 관광시설 등 개발수요로 인해 농촌지역의 고유한 경관이 훼손되어 농촌다움을 잃어버릴 위험이 존재
 - 농촌의 Amenity를 보전하고 증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 상존
 - 농촌관광 등 농촌개발사업의 근거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삶의 근본인 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선호를 유지하고, 도시민에게 휴양·체험 공간을 마련함
 - * 농촌경관은 외부성(externalities)을 지니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재의 특성을 지님, 과소 생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
- 농촌의 경관을 보전·형성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시민들의 휴양·체험 공간으로서의 농촌뿐만 아니라,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여 생활기반으로 삼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연환경, 생활경관, 생산경관을 보전·형성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증가시킴

2. 사업내용

- 사업의 일반적 현황
 - 사업시행시기 : 2004년 ~
 - 사업비용 : 비 예산사업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30조

- 사업추진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별 상이

□ 사업내용

- 경관지표의 개발
 - OECD의 농업환경지표 중 농업경관지표를 참고하여 한국형 농촌경관지표의 개발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원)
- 경관계획의 수립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에 기초한 지자체의 경관계획
- 경관조례의 수립과 이에 따른 경관보전·형성
 -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기초로 경관조례를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한 지자체의 경관보전·형성 노력
 - * '05. 06.현재 15곳의 지자체가 경관형성조례를, 24곳의 지자체가 자연 경관보전조례를 수립, 시행
- 경관협약을 통한 농촌경관의 보전
 - 주민들 스스로 농촌경관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농촌 경관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경관을 형성·보전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을 위한 제도 연구
 - 농촌경관 관리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menity 증진을 위한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연구 (농어촌연구원),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가치의 평가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농어촌연구원), Amenity창조를 위한 경관관리 지침 연구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등
- 직·간접적으로 농촌경관 보전·형성과 관련된 사업
 - 경관보전직불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업무	5개년 계획('05~'09)					비고
	'05	'06	'07	'08	'09	
농촌경관지표개발						
농촌경관 및 Amenity 자원 관리 기반구축						
경관보전직불사업						시범사업실시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인 경관직불 협약 건수는 경관보전 직불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간의 협약 개수
 - '05년도 경관직불 협약 건수는 47개이며, '06년도 경관직불 협약 건수는 미정
 - '06년도 경관직불 예산은 8.4억(국비 6억, 지방비 2.4억)으로 470ha의 면적에서 경관 직불 사업 예정
- 경관직불 사업이 '07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므로 예산과 대상면적은 매년 동일하지만 직불협약 건수는 매년 변동 가능
 - 경관직불 협약 건수를 목표치로 정하는 것은 사업의 성질상 어려움이 존재
 - 성과목표의 달성도 역시 협약 건수의 목표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05년도 목표는 105%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A)	실적(B)	B/A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경관 직불협약건수	시군에서 체결한 경관 직불협약 총 건수	건	45	47	105%

(농림부/농지과)

1. 사업목표

사업목표 및 필요성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중산 간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지역 특히, 조건불리지역 지원필요

사업추진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5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0조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2. 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내의 농지 및 초지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조성 및 마을활성화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
 - 마을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사업비의 30% 이상)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지관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마을협약 및 기금조성 등 마을중심으로 운영
-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인 경지율(22%미만)과 경사도(14%이상 면적이 50%이상)를 적용하여 법정리를 선정

□ 대상농지 : 밭, 과수원, 초지

□ 지원단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요건 :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지 해당 읍·면 및 연접 법정리에 거주

□ 사업기간 : 2004년 ~

□ 사업비('05) : 12,264백만원

□ 사업규모('05) : 31천ha, 35천농가

3.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2009
사 업 량		31천ha	187천ha	187천ha	187천ha	187천ha
합 계		15,984	74,325	74,325	74,325	74,325
사업비	소 계	12,400	73,397	73,397	73,397	73,397
	보조금	8,680	51,378	51,378	51,378	51,378
	지방비	3,720	22,019	22,019	22,019	22,019
행 정 비(국고)		3,584	928	928	928	928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가당 평균지원금액 : 251천원(8,549,961천원/34천농가)

○ 마을공동기금 평균조성비율 : 30%이상 전망

- 30% 조성 1,281개마을, 30-50% : 115개, 51-80% : 19, 81-100% : 8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농가당 평균지원액	농업인보조금지급실적 /실지원농가수	천원	214	251	109%
	마을공동기금 평균조성비율	평균조성비율	%	30	30 이상	

4-4-1-0	1사1촌 운동
---------	---------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1사1촌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정착유도
- 1사1촌 자매결연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회각계로 확대되어 농업·농촌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 증진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시행시기 : 2004년 ~
- 주요추진 사항
 - 민간주도로 내실 있게 추진
 - 1사1촌 추진체계 확립과 기업체 참여 확대
 - 실태점검강화 등 1사1촌 자매결연 내실화 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한 범국민적 운동 추진
 - 우수사례 홍보 및 성과분석
 - 민간의 적극적인 추진 및 참여 독려
 - 농협중앙회에 내실 있는 이행조치 및 점검
 - 단계별 매뉴얼 개발·보급으로 참여 활성화 유도
 - 민간 합동으로 해외사례 조사 및 전파

3. 연차별 추진계획

- 1사1촌 운동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마련 T/F팀 구성 및 운영('05.9~)
 - 농림부, 농협, 농기공, 전경련, 기업체, 마을대표, 학계, 언론사 등 각계 참여
 - 1단계 점화 → 2단계 도약 → 3단계 국민대통합
 - '05.9.23 1차회의 개최, 활동계획협의

4. 성과목표 달성도

□ 적극적인 홍보 및 국민적 관심으로 자매결연 실적('05.12월말 기준) 8,677건으로 목표 대비 289% 달성

○ 결연형태

구분	기업체	소비자 단체	사회·종교 단체	관공서 등	기타	합계
자매결연	4,487	706	418	1,124	1,942	8,677
비율(%)	51.7%	8.1%	4.8%	13.0%	22.4%	100

○ 추진기간별

* ('04.12월까지) 2,404건 → ('05.12월) 8,677(6,273건 261% 증, 월평균 522.8건 체결)

○ 시도별

구분	울산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타
자매결연	437	819	539	554	1,165	595	1,337	1,373	1,039	819
비율(%)	5.0	9.4	6.2	6.4	13.4	6.9	15.4	15.8	12.0	9.4

○ 인적·물적 교류

* '05년 기준 농촌체험·방문자 769천명(기업당 평균 2.9회), 농산물직거래 278억원, 농촌체험 38, 마을기증 31 등 물적교류 454억원

<중앙부처 1사1촌 자매결연 현황>

- 농림부 : 10개 실·국, 관서 6개 기관 88개 마을
- 타부처 :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환경부, 대검찰청 등 23개 기관

○ 범정부적으로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05.7~8)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개

* 7~8월중 농산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이 전년대비 22% 증가

- 농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 상품 보급으로 체험 활동 부담완화
 - ('04) 10개마을→('05) 20 (100%증), '06예산(안) 75백만원 확보
 - 65개마을 보험료 지원계획(마을당 2백만원, 국고50%, 지방비 50%)
- 농촌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로 1사1촌 자매결연 적극 추진 분위기 조성
 -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를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홍보('05.4.27~5.1)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농촌체험마을(50개), 지자체(13개), 유관기관 및 업체(22개) 등 참가, 당초 목표 5만명을 크게 초과한 6.8만명 방문
 -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신 농산어촌 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효과 극대화('05.5.21 단양 한드미마을)
 - TV, 신문, 잡지, 대중교통,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KBS 1TV 6시 내고향·싱싱 토요일, KBS 2TV 세상의 아침 등 프로그램에 농촌체험마을 소개 코너 등 마련
 - 중앙 일간지와 지방신문의 체험사례 및 이벤트 적극 보도
 - 체험휴양시설 안내를 위한 콜센터(1577-1417) 및 관광포털사이트 (www.greentour.or.kr) 운용
 - PCRM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소개 책자·지도 등을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 농협, 민원실 등 공공장소에 비치(농촌체험관광 2만부, 그린맵 7만부 등)
 - 전국 아파트 반상회 회보를 통한 홍보('05.4.7)

-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05.7~8월)
 - 농림부장관·농협중앙회장 공동명의로 캠페인 참여 협조서신 발송 (8천명, '05.7.4)
 - 캠페인 발대식 개최('05.7.11, 서울 명동)
 - 농림수산 유관기관 직원의 1+1운동 전개 등 솔선 참여
 - 농림수산 유관기관 직원의 52%가 농산어촌에서 여름휴가 실시
 - 7~8월중 농산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가 전년대비 22% 수준 증가
-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및 1도1촌 우수마을 선정으로 농촌 활성화 추진(공모기간 : 6~9월, 응모 : 44개 마을)
- 1사1촌 자매결연 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한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식 개최(추천건수 67건, '04년 48건대비 40% 증가)
- 1사1촌 기반확대를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추진
 - ('04) 32개소 → ('05) 47개소
- 체험마을 컨설팅을 위한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구축' 하여 교류프로그램 운영
 - 1인1촌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05.6.17)
 - 마을과 전문가 참여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선정
 - 컨설팅 전문가 인력 pool 구성 및 40개 농산어촌체험마을과 전문가간 협약 체결하여 자문 실시('05.7~)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1사1촌 운동	자매결연체결 실적 수	총 자매결연 체결 수	건	3,000	8,677	289%

4-4-2-0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 갖기 활성화
---------	--------------------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도시민, 도시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에 주택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 공간 확충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제형 주말농장, 은퇴농장 등 조성

2. 사업내용

- 도시민의 집단적 농촌유지를 위해 도시수요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 확충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지원
- 언론매체 홍보, 금융상품 제공,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도시민의 농산 어촌 주택 갖기 유도
- 농촌지역 정착 성공사례를 발굴하는 등 도시민 투자의식 고취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09
홍보·캠페인	3회이상 시행	5회이상 시행	28회이상 시행
전원마을조성사업	28개 지구	25개 지구	245개 지구

※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수는 신규 착수기준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당초 목표를 33% 초과달성

- 계획 : 홍보·캠페인 연 3회 실시
- 실적 : 홍보·캠페인 연 4회 실시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도시민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	홍보 및 교육시행건수	홍보 및 교육시행 총건 수	회	3	4	133%

4-4-3-1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	----------------------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및 사회적 붐 조성
-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 상호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집행
 - 사업기간 : '03년 이후 (계속)
 - 재원형태 : 국고 100% (* 농·소·정협력사업은 정액보조)
- 사업내용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 체험기 공모전 매년 개최
 - 초등학생의 도농 생활체험캠프 운영
 -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수요층의 회원화 유도방안 강구
 - 도농교류상을 정례화하여 도농교류활성화 분위기 조성
 - 농업인과 도시민간 상호교류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또는 자부담	기타	합 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5	1,008	-	-	-	1,008	-	-	1,008
2006	1,150	-	-		1,150	-	-	1,150
(증△감)	142	-	-		142	-	-	142

4. 성과목표 달성도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방문객수 '05년 목표치 대비 초과달성

* 녹색농촌마을 방문객수 : ('05목표치) 510천명 → ('05실적) 994천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녹색농촌체험을 방문객수	총 방문객수	천명	510	994	195%

4-4-3-2

도농교류센터 운영

(농림부/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사업목표

- 도시지역의 자원과 활력을 농촌에 유입시켜 농외소득의 증대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농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관광·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

*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도농교류센터」로 확대·개편('04.5월)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7조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 교류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03년이후 (계속)

사업비('05) : 305백만원 (도농교류센터 운영경비)

추진경위

- '03. 1 : 「농촌투자유치센터」 개소 (한국농촌공사 운영)
- '04. 3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 '04. 4 : 「농촌투자유치센터」에서 「도·농교류센터」로 확대·개편 운영
- '04. 5 : 「도·농교류센터」개소식 및 자매결연식 개최

□ 사업 방향

-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
 -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교육·훈련, 도시자본 투자유치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 도농교류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도농교류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시행 계획 승인(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 (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 주요 사업내용

-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추진 등 마을사후 관리 지원
- 농촌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나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주관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추진 지원
 -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농촌관광 포털 사이트 운영
 - 농산어촌체험박람회, 농촌에내집갓기운동, 도농교류체험기, 올해의 도농교류상 등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을 전담 추진

- 기업체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 등 1사1촌 운동 추진 지원
 - 자매결연 체결알선,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 투자유치 대상사업 발굴·지원, 정보제공 등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업무
-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융자계획(국고)

(단위 : 억원)

구 분	5개년('05~'09) 계획					
	'05	'06	'07	'08	'09	소계
도농교류센터 운영	3	9	9	9	10	4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홈페이지 방문객수는 '05년에 601,000명을 목표로 하여 '05.12월 까지 616,843명이 마을을 방문, 당초 목표의 102.6%를 달성 (목표 대비 2.6%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도농교류센터 운영	홈페이지 방문자수	농촌관광포털 및 도농교류센터 홈페이지 방문자수	천명	601	617	103%

(농림부/농촌정책과)

1. 사업목표

- 도농교류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속화
- 도농교류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사항해소 및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가능

2. 사업내용

- 법안의 주요내용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단위 체험·휴양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특례·지원 규정 마련
 - 소규모 음식물 및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등에 있어 농촌특성에 맞게 시설기준을 완화해주는 등 특례 부여
 - 도농자매결연 및 교류협력활동 지원확대 및 교류확인서 발급
 - 마을이장이 해당 마을에 대한 기부 및 활동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농산어촌 투자 및 귀농·귀촌 희망도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농산어촌 투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자문기능 강화
 - 귀촌희망 도시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등 지원
 - 도농교류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 및 체험지도사·마을해설사 등 자격제도 도입
 - 제반 도농교류활동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도농교류 지원기구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근거 마련

3. 연차별 추진계획

- 부내 협의를 통한 우리부 법안 확정 : '06.3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6.5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6.8월
- 국회제출 : '06.9월

4. 성과목표 달성도

- '05년 성과목표 : '06년 법제정을 목표로 한 법제정 검토
 - '05년동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결과 및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법안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므로 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5목표 (A)	실적 (B)	B/A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입법절차이행계획 대비 실적	입법절차 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정성적으로 산정	-	국회 제출	법안 마련	

20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2006. 5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단

목 차

I. 추진배경 및 점검·평가개요	209
II. '05년도 추진실적 평가	211
III. 평가결과 조치의견	220
< 참고자료 >	
1. 점검·평가단 위원명단	223
2. 사업별 평가결과	224
3. 지방이양사업현황	228

I. 추진배경 및 점검·평가 개요

□ 삶의질 기본계획상의 각 부처별 사업들의 효과적 추진과 업무개선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점검·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 삶의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점검·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

□ 실무위원회는 별도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05.12.19)

○ 아울러, 평가기준, 일정, 방법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함

1. 평가단

□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점검·평가단** 구성(점검·평가단 위원 명단 : <참고 1>)

○ 점검·평가단은 **총괄,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의 5개 분과팀 21명**으로 구성(단장 : 협성대 윤원근 교수)

2. 평가대상 사업

□ 이번 평가에서는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05년도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상의 **91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

3. 평가기준 및 방법

□ 사업추진의 단계별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실시

- 계획단계 : 사업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절차적 합리성
- 집행단계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중간점검 결과 반영, 자원조달 등
- 성과단계 : 삶의질 향상 기여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

□ 평가위원회는 부처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 기준과의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실시

- 부처별 의견을 듣고, 전체회의에서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분야별로 사업을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A(상위 20%), B(60%), C(하위 20%)의 등급 부여 [분야별 상대평가]

- 개별사업별로 중요도에 따라 주요사업(사업비 300억원 이상, 영향력이 큰 사업 등)과 기타사업으로 구분

4. 평가절차 및 일정

□ 점검·평가지침을 작성, 평가단에서 심의·확정('05.12.23)

- 각 부처에 점검·평가지침 통보('05.12.26)

□ 각 부처에서 소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사무국(농림부 농촌정책국)에 제출(2월말)

□ 사업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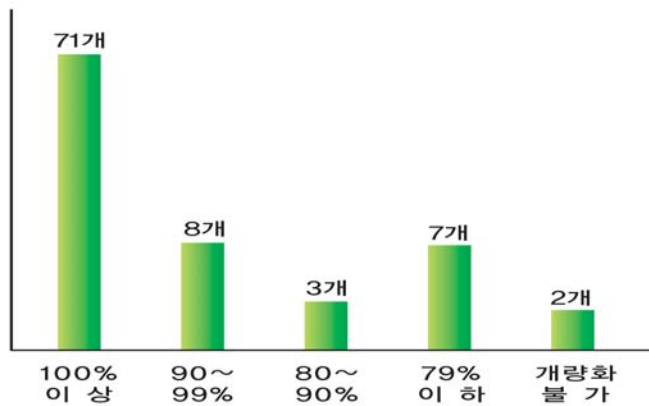
- 사업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3~5월)

II. '05년도 추진실적 평가

1. 총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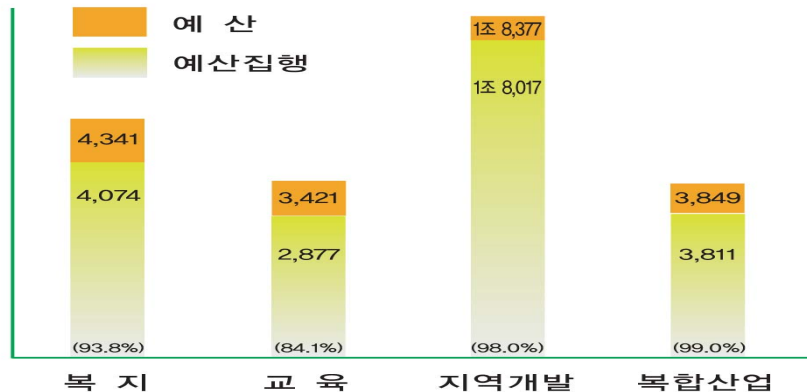
〈 실 적 〉

◇ 평가 대상 91개 사업 중 79개 사업(86.8%)이 사업목표의 90%이상을 달성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기본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



◇ 총 사업비 2조 9,988억원 중 2조 8,779억원 집행 (95.9%)

- 복지 : 예산 4,341억원 중 4,074억원 집행 (93.8%)
- 교육 : 예산 3,421억원 중 2,877억원 집행 (84.1%)
- 지역개발 : 예산 1조 8,377억원 중 1조 8,017억원 집행 (98.0%)
- 복합산업 : 예산 3,849억원 중 3,811억원 집행 (99.0%)



※ '05총사업비는 3조 4,064억원이나, 농어촌도로정비(3,424억원) 등 3개사업 집행실적 미제출

< 평 가 >

- 삶의 질 향상대책에 반영된 부처별 다양한 사업들의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별 확대, 축소의 방향을 제시
- 91개 개별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
- 유사한 사업간에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음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사업을 종합화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5개년 기본계획은 농촌의 생활인프라 수준의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과소화 등에 대응한 적극적인 신규과제 추가 필요
 -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정주지원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외국 출신 농촌주민을 위한 정책 등

2. 분야별 평가

□ 복지분야 사업 평가

< 실적>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04 : 30% → '05 : 40) 등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구축
-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217개소 신증축), 건강관리실
설치(108개소) 등으로 농어촌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
- 농어촌 주민의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양육비 지원
및 보육시설 설치 확대
 -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05 : 31천명), 농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05 : 29천명)

<평가>

- 대부분의 농산어촌 복지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음
 -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 지원,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등의
사업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 사업 등은 지방비
및 민간사업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부진
-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사업과 복지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

□ 교육분야 사업 평가

< 실적>

- 우수고교 집중육성('05 : 7개교), 대입특별전형 확대('04 : 3% → '05 : 4) 등으로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기회 확대 및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도시 유출 방지
-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05 : 56천명), 고교생 학자금 지원확대('04 : 1.5ha미만, →'05 : 전 농어가) 등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 방과후 교육활동('05 : 초등학생 38.8% 참여)를 통해 농어촌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 및 교육기회 부여

<평가>

- 우수고교 육성, 대입특별전형 확대, 고등학생·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교육비부담 경감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적정규모 학교 육성지역 시범지역 지원은 사업이 중복되고, 교육발전협의회 등은 현지실정에 부합되지 않아 목적달성 미흡
- 향후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 절실
 - 외국인 부인과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 지역개발 사업 평가

< 실적>

- 농촌마을 종합개발('05까지 : 36개권역), 소도읍 육성('05까지 : 43개소) 등을 통해 기초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
-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04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 35.2%), 면단위 하수도 ('04 면지역 하수도 보급률 : 31.9%)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개선
-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조성('05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 95%) 등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평가>

- 농산어촌지역개발 분야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대규모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인력양성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영역의 확대 및 다양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 등은 기존의 관행적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주민·행정기관간의 파트너쉽 운영, 마을 사무장제 도입 등 새로운 방식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반면 농촌정주기반 확충, 오지종합개발 등은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추진함에 따라 투자효과 저하
- 유사·중복사업이 많아 사업 통폐합, 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등 효율화 방안 검토 필요

□ 복합산업 활성화 사업 평가

< 실 적 >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05 : 47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05 : 21개 마을) 등을 통해 농산어촌 관광 인프라 구축
- 경관보전직불제('05 : 470ha), 생태숲 조성('05 : 16개소) 등을 통해 국토지킴이로서의 농림어업인의 역할을 부각
- 1사1촌운동을 통해 민간주도의 도농교류 기반을 구축
 - 자매결연 실적('05.12월까지) : 8,67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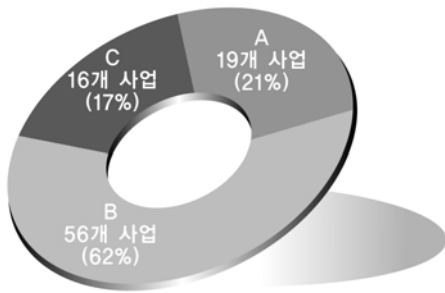
< 평 가 >

-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주민역량을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실행
- 1사1촌 운동, 경관보전직불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은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도모
 - 사업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반면,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유사·중복사업이 있어 사업 통폐합 등 체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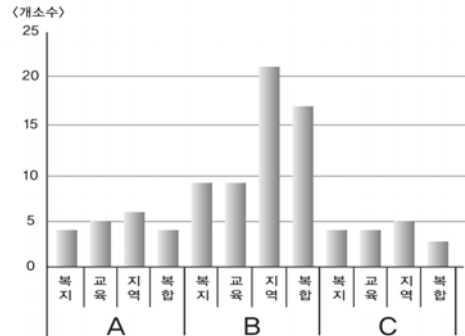
3. 개별사업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개별사업을 A, B, C 로 구분

○ A 19개 사업(21%), B 56개(62%), C 16개(17%)



<평가등급(전체)>



<평가등급(분야별)>

□ 개별사업별 평가결과(B등급은 참고2 참조)

평가등급	분야별	사업명
A(19)	복지(4)	국민건강보험제도,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영유아 양육지원
	교육(5)	우수고교 집중육성,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한국농업전문 학교 개편,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지역개발(6)	농촌마을종합개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소도읍육성, 면단위 생활용수, 소하천 정비, 정보화인프라구축
	복합산업(4)	녹색농촌체험마을, 1사1촌운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경관보전 직불제
C(16)	복지(4)	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설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경영이양직불제
	교육(4)	적정규모학교 육성시범지역 지원,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대학생 학자금 보조, 교원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지역개발(5)	오지종합개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농촌정주기반 확충, 정보화마을, 문화체육센터 건립
	복합산업(3)	어촌체험마을, 향토자원 소득화,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4. 평가단 선정 집중평가 대상사업(16개) 평가 의견

분야	집중평가 대상사업	평가등급	평가의견
복지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농어가 가구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더욱 확대 필요 - 직불금에 대한 특례를 경영이양직불제 등으로 확대 검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추가적인 완화 - 사업관련 농어촌지역 기초통계자료 구축 필요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 -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고 복지사업과 연계 필요 -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치과의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보건지소 등과 네트워크 체제 완비 필요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의 실정에 맞게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기존의 건물이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한 후에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 - 저소득층 농가 및 편부모(조부모) 아동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
	농촌 건강장수 마을 육성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거리 발굴을 통해 노인들의 자립을 높이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함 - 제품 마케팅에 대한 마인드 미흡 - 개소 당 사업비(현행 50백만원) 확대 필요 - 어르신들에게 삶의 희망과 비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확대
교육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 육성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사업임 - 학교운영 모델 정립을 위해 컨설팅 체제 마련 필요 - 조기에 전국 1군 1우수고 체제 확립 필요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공을 위해 강사 확보가 관건인 바, 순회강사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 - 농어촌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인력확보를 위해 교대생 활용 등 고려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사업임 - 식품비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현실화 필요

분야	집중평가 대상사업	평가등급	평가의견
지역개발	농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지역별, 사업별, 교육단계별 교육내용 차별화 필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전문가·행정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사무장제 도입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추진방식 개선 - 마을공동운영사업에 대해 운영방안 등 보완 필요
	소도읍 육성사업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향식 공모제와 선택과 집중방식을 도입하여 관행적 지역개발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함 - 일부 지자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과다부담, 타부처 사업중복 등 문제 발생 -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추가확보 필요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마을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소득향상에 기여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면단위 생활용수개발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대해 환경부와 농림부간 협의·조정이 필요함
복합산업	문화역사 마을 조성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전문가 및 행정기관간 거버넌스에 바탕한 사업 추진체계는 바람직함 -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사업홍보가 부족함 - 농산어촌 체험마을 실무협의회와 공동보조를 맞추고 통합지침에 연계하여 사업추진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어촌의 관광기반 확충은 바람직함 -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어업외 소득창출 방법 구체적 제시 및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필요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임 - 휴양림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필요
	경관보전 직불제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지킴이로서의 농업인 역할을 부각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가꾸기의 좋은사례로 사업확대 필요 - 대상작물을 확대하고 지급단가 상향조정 필요
	1사1촌 운동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로 도농교류 활성화하여 바람직함 - 아직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며, 현단계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단계별 발전전략 필요

Ⅲ. 평가결과 조치의견

- ◇ 조치의견은 각 부처, 예산처 등에서 '07사업에 반영필요
- ◇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반영여부 검토

1. 예산편성 방향

- A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증액, C등급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의 시정조치를 통한 사업개선 또는 필요시 예산감액 등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Feed back) 필요

※ 제3차 실무위원회 결정('05.12) : 평가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증감 등 의견제시

2. 유사·중복사업 처리방향

-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을 여러부처가 분산 추진하고 있어 중복과 비효율 초래
- 유사·중복사업에 대해 통합지침 마련, 실무협의회 구성 및 사업통폐합 등 추진체계 정비방안 마련 필요
- 지방단위에서의 통합·연계 추진, 부처간 협력(통합지침), 통폐합 등 단계적 접근
- 유사 중복 사업사례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농림부)과 오지종합개발사업(행자부)은 사업 대상지만 다를 뿐 사업내용이 유사
 - 적정규모 학교육성 시범지역 지원(교육부)은 우수고교 집중육성(교육부)과 사업성격이나 추진과정, 사업내용이 중복

3. 제도개선사항

-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등 대부분의 지방이양사업은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부실이 우려됨
 -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분권교부세 증액, 지방재정 교부시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특별법」중 농어촌 복지분야를 특화한 법으로 법률 체계 및 내용이 비슷 → 통합 필요
-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법령 제개정 필요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농어업인 확인서 발급업무를 시장·군수의 업무로 규정 필요

4. 삶의질향상 대책 추진체계 개선과제

- 현재의 예산으로는 농어촌 삶의질을 향상시키기에 크게 부족하므로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함
 -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 외국인 부인 및 자녀교육 문제 등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필요
- 삶의질향상 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사무국 보강 필요

- 오래되어 놓여온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정책들은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점검·평가 기능과 평가 결과의 반영을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
 - 점검·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점검·평가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의 익년도 예산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 조항 신설 검토
 - 각 부처의 사업 담당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참고 1 >

점검·평가단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성별	분야	추천부처
복지	탁명구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남	생산자 단체	농림부
	박대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	연구기관	농림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의료연구실장	남	연구기관	복지부
	홍미령	경희대 교수 노인문제연구소장	여	학계	복지부
	원향례	상지대학교 교수	여	학계	농진청
교육	김성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국장	여	생산자 단체	농림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여	연구기관	교육부
	임연기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남	학계	교육부
	최준렬	우석대 교육학과 교수	남	학계	교육부
	강일국	목포대 교육학과 교수	남	학계	해수부
지역 개발	홍준근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남	생산자 단체	농림부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실장	남	연구기관	행자부
	박시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	연구기관	농림부
	손진식	국민대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남	학계	환경부
	임경수	(주) 이장 대표	남	민간업체	문화부
복합 산업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남	생산자 단체	해수부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여	연구기관	농림부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팀장	남	연구기관	문화부
	최수명	전남대 생물산업공학과 교수	남	학계	농림부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남	민간업체	농진청

< 참고 2 >

사업별 평가결과

(복지분야)

코드번호	사업명	소관부처	중요도	평가점수	환산점수	순위*	평가등급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농림부	주요	90.8	95.3	4/3	A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주요	88.4	92.8	9/5	B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농림부	기타	89.2	89.2	7/9	B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해수부	기타	86.8	86.8	13/14	C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복지부	기타	87.4	87.4	10/11	B
1-2-1-2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복지부	주요	91.8	96.6	2/1	A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 확충	농진청	기타	87.4	87.4	10/11	B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여성부	주요	86.0	90.3	14/7	B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여성부	주요	89.8	94.3	5/4	A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 지원	농림부	주요	91.8	96.4	2/2	A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농림부	기타	89.4	89.4	6/8	B
1-3-3-1	농어가도우미 지원 확대	농림부	기타	89.2	89.2	7/9	B
1-3-5-2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농진청	기타	87.0	87.0	12/13	B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복지부	기타	84.6	84.6	16/16	C
1-4-1-2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설치운영	복지부	기타	79.2	79.2	17/17	C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진청	기타	92.8	92.8	1/5	B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농림부	기타	85.0	85.0	15/15	C
평 균				88.1	89.7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교육분야)

코드번호	사업명	소관부처	중요도	평가점수	환산점수	순위*	평가등급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교육부	주요	95	99.8	2/1	A
2-1-1-2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특별전형 확대	교육부	주요	83	87.2	14/12	B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 내실화	교육부	기타	85	85	12/13	B
2-1-1-4	한국 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농진청	기타	96	96	1/3	A
2-1-2-6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교육부	기타	76	76	16/16	C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부	기타	95	95	2/4	A
2-1-3-5	방학캠프 운영지원	교육부	기타	93	93	6/7	B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교육부	주요	90	94.5	9/6	B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림부	주요	86	90.3	11/10	B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농림부	기타	89	89	10/11	B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농림부	기타	81	81	15/15	C
2-2-3-1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부	주요	94	98.7	5/2	A
2-2-3-2	자영농과계 급식비 지원	농림부	기타	92	92	8/9	B
2-2-3-2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해수부	기타	85	85	12/13	B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교육부	기타	93	93	6/7	B
2-3-1-2	교원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교육부	기타	70	70	17/17	C
2-3-4-0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교육부	기타	95	95	2/4	A
2-3-5-0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	교육부	기타	60	60	18/18	C
평 균				86.6	86.6		

(지역개발분야)

코드번호	사업명	소관부처	중요도	평가점수	환산점수	순위*	평가등급
3-1-1-0	농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농림부	주요	85	89	8/7	B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림부	주요	91	96	2/2	A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수부	주요	74	78	26/24	B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	기타	77	77	25/27	B
3-2-2-1	소도읍육성사업	행자부	주요	93	98	1/1	A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행자부	주요	79	83	20/15	B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농진청	기타	84	84	10/13	B
3-3-2-1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환경부	주요	86	90	7/6	A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농림부	주요	81	85	17/12	B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	환경부	주요	82	86	13/9	B
3-3-2-4	소하천 정비사업	방재청	주요	90	95	4/3	A
3-3-2-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주요	70	74	31/30	C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농림부	기타	85	85	9/11	B
3-3-3-2	교통서비스 강화	건교부	기타	78	78	24/26	B
3-3-3-3	국고여객선 건조	해수부	기타	83	83	11/14	B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농림부	주요	71	75	29/29	C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행자부	주요	71	75	28/28	C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행자부	주요	74	78	27/25	B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부	주요	89	93	5/4	A
3-3-5-2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부	기타	70	70	32/32	C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문화부	기타	82	82	14/18	B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문화부	기타	87	87	6/8	B
3-3-5-5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부	기타	83	83	12/16	B
3-3-5-7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기타	81	81	18/19	B
3-3-6-1	정보화마을 조성	행자부	기타	71	71	30/31	C
3-3-6-2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정통부	주요	82	86	15/10	B
3-3-6-3	정보화인프라 구축	농림부	기타	91	91	3/5	A
3-3-6-4	디지털 어촌 구축사업	해수부	기타	79	79	21/23	B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림부	기타	79	79	22/22	B
3-3-7-2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농림부	기타	82	82	16/17	B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농림부	기타	80	80	17/20	B
3-3-7-5	어업인 정보화 교육	해수부	기타	79	79	23/21	B
평균				81	83		

(복합산업 분야)

코드번호	사업명	소관부처	중요도	평가점수	환산점수	순위	평가등급
4-1-1-2	향토자원 소득화사업	농림부	기타	57.3	57.3	24/24	C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농림부 산자부	기타	82.4	82.4	10/11	B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기타	79.5	79.5	16/16	B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림부	기타	87.6	87.6	1/1	A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농진청	기타	87.4	87.4	3/3	A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문화부	기타	78.4	78.4	19/19	B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해수부	기타	75.8	75.8	22/22	C
4-2-1-5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해수부	기타	79.0	79.0	17/17	B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산림청	주요	82.4	86.5	10/8	B
4-2-1-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문화부	주요	66.2	69.5	23/23	C
4-2-1-9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농림부	기타	77.8	77.8	20/20	B
4-2-2-1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농림부	기타	85.8	85.8	7/9	B
4-2-2-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농림부	기타	86.6	86.6	6/7	B
4-2-3-0	중앙, 지방, 민간네트워크 구축	농림부	기타	81.8	81.8	14/14/	B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화부	기타	79.0	79.0	17/17	B
4-3-1-0	경관보전 직불제	농림부	기타	87.6	87.6	1/1	A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산림청	기타	80.8	80.8	15/15	B
4-3-5-0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농림부	기타	77.2	77.2	21/21	B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농림부	기타	86.8	86.8	5/5	B
4-4-1-0	1사1촌 운동	농림부	기타	87.4	87.4	3/3	A
4-4-2-0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	농림부	주요	82.6	86.7	9/6	B
4-4-3-1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농림부	기타	84.2	84.2	8/10	B
4-4-3-2	도농교류센터 운영	농림부	기타	82.4	82.4	10/11	B
4-4-4-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농림부	기타	82.0	82.0	13/13	B
평균				80.75	81.23		

< 참고 3 >

지방이양사업 현황

(단위 : 억원)

분 야	사 업 명	사업비 ('05년)	해당부처
복 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29	농림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38	농림부
교 육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189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8	교육부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505	교육부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438	교육부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813	농림부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21	농림/해수부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171	교육부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설치	비예산	교육부
지역개발	교통서비스 강화	231	건교부
합 계	총 11개 과제	2,443	